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1. 30.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조 광 민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 종 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정 지 명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박사과정)
보조연구원	지 민 준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박사과정)
보조연구원	손 혁 상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석사과정)
보조연구원	오 지 윤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석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를 신체적, 언어적, 성적(성추행) 폭력과 학습권 침해로 분류하여 이러한 폭력실태를 종목별,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제시함이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6년 7월 31일~2006 9월 8일 약 40일에 걸쳐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지역별로 비례층화 추출법(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수 144개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시도로 설정하였다. 대상 학교와 종목은 단순무선표집법(simple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를 기준으로 남녀비율과 종목별 비율을 나눠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인권상황 실태에 대한 검증과 또 다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행정입안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한 1차 개선방안을 검증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전문가를 통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새로운 2차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그리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최종 인권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연구절차

1단계: 국내 학원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고 각 15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거하였다.

2단계: 문헌조사와 교육청 자료 등을 근거로 연구소 세미나를 통해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단계: 예비설문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종설문지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4단계: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2006년 7월 25일 최종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5단계: 설문조사는 2006년 7월 31일~2006 9월 8일 약 40일에 걸쳐 전국 15개 시도별로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총 746명의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에게 표집을 실시하여 1차 결과를 도출하였다.

6단계: 현장 지도자와 학부모 그리고 정책입안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1차 개선방안을 보완 수정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7단계: 2차 결과를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2차 개선방안을 보완 수정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8단계: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

2)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자료를 Windows용 SPSS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심층면접과 전문가 세미나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를 실시하여 녹취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권실태상황 요약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초등학교 운동선수는 총 응답자 746명 중 554명(74.3%)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운동선수는 총 응답자 중 559명(74.9%)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중 3명은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단체종목 총 응답자 515명 중 417명(81%)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종목 총 응답자 128명 중 64명(50%)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77명(60.2%)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종목의 경우 총 응답자 103명 중 68명(66%)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65명(63.1%)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11명(14.9%)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적 폭력 피해는 2006.1.31 선고2005도6791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학생도 포함시켰다.

2)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세미나 결과요약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본 인권상황실태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합숙훈련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선발문제와 타 지역으로부터 온 어린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합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전국소년체전 등의 전국대회입상을 위해서 수업참여를 강제로 막는 시·도가 있으며 특히 일부종목(테니스)등이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중훈련을 받고 있다고 면접을 통해 밝혀졌다. 셋째, 총체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소년체전을 폐지하고 클럽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세미나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의 개인이익을 얻기 위한 체육정책 문제점, 선수모니터링의 어려움 그리고 강력하고 법적효력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개선방안

1) 체육 정책적 측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일 수업시수 결손 문제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학습권 보장 문제 그리고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별 전국규모 대회 참가(소년체전)를 년 2회로 제한하며 방학을 이용한 전국규모 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또한 년 중 전국규모대회 횟수를 단계별로 축소하며 주말을 이용한 권역별 리그제를 활성화 시킨다.

2) 법적·제도적 측면

본 연구에서 나타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므로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인권위원회 산하 '학생운동선수 인권보호부서(가칭)'을 설치하며 '아동인권보호 전담관(가칭)'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효력을 갖춘 '운동부 운영에 관한 규율 조항(가칭)'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인권보호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3) 충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측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현장에서 폭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피해를 부모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시 폭력피해에 대한 무관심이 현장지도자들의 심층면접결과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별 '인권홍보 지도교사'를 선발하며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초등학교 운동부원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의식 변화 유도 측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비추어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주체가 대부분 지도자들로 나타났기에 현장에서의 의식변화 요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안내문과 피드백을 활성화하며 학교현장에서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며 인권피해의 부작용을 홍보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예방과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한다.

<목 차>

<연구결과 요약문>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4
II. 실태조사 방법	8
1. 연구설계	8
2. 표집방법	9
3. 조사도구 및 방법	12
4. 자료처리	12
III.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	14
1. 설문조사 결과	14
가.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일반적 특징	14
나.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운동부 생활 실태	17
다.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실태	26
라. 성별, 종목별, 학년별 폭력실태 비교분석	41
마. 폭력피해 여부에 따른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평균비교	53
2.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결과	68
IV. 외국의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개선 방안	75
1.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규칙(영국 사례)	75
2. 폭력예방을 위한 제안서(미국, 캐나다 사례)	84

3. 폭력예방을 위한 운동부 운영시스템(일본, 독일 사례)	88
V. 학생운동선수 인권개선 방안 및 제언	90
1. 체육 정책적 측면	92
2. 법적·제도적 측면	94
3. 충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측면	97
4. 의식 변화 유도 측면	98
5. 제언	101
 참고문헌	 103
 첨부1 (설문지)	 105
 첨부2 (초등학교 체벌에 관한 법규)	 112
 첨부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대법원 판례)	 114

<표 차례>

<표 2-1> 시·도별 운동부 운영 초등학교 비율 및 표본수	10
<표 2-2> 전국 남녀 초등학교 운동부 선수 비율	10
<표 2-3> 종목별 표본 수 배분	11
<표 3-1>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일반적 특성	15
<표 3-2>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학교생활에 관한 일반적 특성	16
<표 3-3>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운동부 생활에 관한 실태	18
<표 3-4> 합숙일수	21
<표 3-5> 일일 평균 수업 참여시간	24
<표 3-6> 보충수업 실시자	25
<표 3-7>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폭력 피해 실태	28
<표 3-8>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	35
<표 3-9> 성적 폭력 가해자	36
<표 3-10> 성적 폭력 피해 부위	36
<표 3-11> 성적 폭력 피해 장소	37
<표 3-12> 성적 폭력 피해 후 기분	37
<표 3-13>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41
<표 3-14> 성별에 따른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42
<표 3-15>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43
<표 3-16> 성별에 따른 평균 수업참여 시간 실태 비교	44
<표 3-17> 종목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45
<표 3-18> 종목별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46
<표 3-19> 종목별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47
<표 3-20> 종목별 평균 수업 참여시간 비교	48
<표 3-21> 학년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49

<표 3-22> 학년별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50
<표 3-23> 학년별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51
<표 3-24> 학년별 정규수업 참여 실태 비교	52
<표 3-25>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집착 상승 차이	53
<표 3-26>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시험성적 향상 차이	54
<표 3-27>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승리 집착 상승 차이	55
<표 3-28>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56
<표 3-29>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 등교 거부감 차이	57
<표 3-30>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58
<표 3-31>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생활 만족도 차이	59
<표 3-32>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60
<표 3-33>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후배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차이	61
<표 3-34>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62
<표 3-35>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 등교 거부감 차이	63
<표 3-36>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64
<표 3-37>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생활 만족도 차이	65
<표 3-38>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66
<표 3-39> 성적 폭력 피해 후 지도자, 운동부생활, 학교생활에 관한 비교	67
<표 4-1> 2006년 초등학교 전국규모 야구대회 일정	94
<표 4-2> 2006년 초등학교 전국규모 테니스대회 일정	94

<그림 차례>

<그림 3-1> 운동시작 동기	19
<그림 3-2> 운동지속 여부	19
<그림 3-3> 운동지속 반대 이유	20
<그림 3-4> 입상성적(전국대회규모)	21
<그림 3-5> 합숙경험	21
<그림 3-6> 일일평균 운동시간(시합이 없을 때)	22
<그림 3-7> 일일평균 운동시간(시합이 있을 때)	22
<그림 3-8> 적정운동시간	23
<그림 3-9> 일일평균 참여 수업시간	24
<그림 3-10> 보충수업	25
<그림 3-11>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28
<그림 3-12>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28
<그림 3-13> 언어적 폭력 가해자	28
<그림 3-14> 언어적 폭력 피해 장소	29
<그림 3-15> 언어적 폭력 피해 이유	30
<그림 3-16> 신체적 폭력 가해자	31
<그림 3-17> 신체적 폭력 피해 이유	31
<그림 3-18> 신체적 폭력 피해 시기	32
<그림 3-19> 신체적 폭력 피해 장소	33
<그림 3-20> 신체적 폭력 피해 도구	33
<그림 3-21> 신체적 폭력 피해 부위	34
<그림 3-22> 성적 폭력 가해자	35
<그림 3-23> 신체적 폭력 피해 후 기분	38
<그림 3-24> 신체적 폭력 피해 후 보고	39

<그림 3-25> 지도자와 부모님간의 면담	40
<그림 3-26> 신체적 폭력 피해결과(남학생)	41
<그림 3-27> 신체적 폭력 피해 결과(여학생)	41
<그림 3-28> 언어적 폭력 피해 결과(남학생)	42
<그림 3-29> 언어적 폭력 피해 결과(여학생)	42
<그림 3-30> 성적 폭력 피해 결과(남학생)	43
<그림 3-31> 성적 폭력 피해 결과(여학생)	43
<그림 3-32> 수업참여 실태 결과(남학생)	44
<그림 3-33> 수업참여 실태 결과(여학생)	44
<그림 3-34> 종목별 신체적 폭력 피해 비교	45
<그림 3-35> 종목별 언어적 폭력 피해 비교	46
<그림 3-36> 종목별 성적 폭력 피해 비교	47
<그림 3-37> 종목별 정규수업 참여 비교	48
<그림 3-38> 학년별 신체적 폭력 피해 비교	49
<그림 3-39> 학년별 언어적 폭력 피해 비교	50
<그림 3-40> 학년별 성적 폭력 피해 비교	51
<그림 3-41> 학년별 정규수업 참여 실태 비교	52
<그림 3-42>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집착 상승 차이	53
<그림 3-43>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시험 성적 향상 차이	54
<그림 3-44>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승리 집착 상승 차이	55
<그림 3-45>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56
<그림 3-46>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등교 거부감 상승 차이	57
<그림 3-47>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58
<그림 3-48>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생활 만족도 차이	59
<그림 3-49>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60
<그림 3-50>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폭력 가해 차이	61
<그림 3-51>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62

<그림 3-52>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등교 거부감 차이	63
<그림 3-53>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64
<그림 3-54>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생활 만족도 차이	65
<그림 3-55>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욕구 차이	66
<그림 4-1 > 학생운동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조직 모형	95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학원스포츠의 폭력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사시절의 엘리트 선수위주 체육교육 정책, 사회문화적 가치관, 운동지도자의 교육체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등이 그것이다. 우선, 과거 군사정부 이해 체육정책의 중심이 엘리트 선수육성에 두어져 왔는데, 이는 한국 체육의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왜곡된 체육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의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비판에 머물렀다. 그 결과, 강신욱의 연구에 의하면 학문적 연구 면에서도 선수가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운동 시간이나 선수의 학업 이수율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학문적인 비판이 금기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학교 운동부 활동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체육 활동에 대한 자해 행위로까지 취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신욱(1999)의 연구를 보면 과거 운동선수의 집단 반발로 야기된 선수 폭력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선수들이 지도자 및 선배에 의해 가혹행위, 열차려, 구타 등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선수 폭력은 엄연히 존재하며 선수의 성, 학교급, 운동유형,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기간, 입상실적, 운동부원 수, 코치, 코치 연령, 코치 학력에 따라서도 신체적 학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전반에서 선수 집단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체벌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웅식, 2001). 이런 문제에 의거하여 류태호(2004)는 선수 중심의 학원스포츠는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서 운동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인간주의 교육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선수 폭력은 특성상 지속적이고, 가학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 선수관련 선행 연구(류태호, 2004; 백종수, 2004; 강창곤, 200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학생 선수는 정과 수업이나 학과공부 보다 운동부에서 보내

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 결과 선수는 선배 및 감독, 코치와 필연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폭력이 발생한다면 그 유형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폭력의 행사가 소수로 구성된 단위 운동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소수의 관계자들이 목인하게 되면 쉽게 은폐되는데 이 경우 폭력의 정도 및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교적 소규모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대하는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점, 폭력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개연성 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은 이런 경향은 해마다 계속되어 관행으로 굳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수폭력이 주기적으로 재생산됨에 따라 맞던 하급생이 이후 때리는 상급생으로 성장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 이 경우 한 개인이 선수폭력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 폭력에 대한 공범심리가 단위 운동부 내에 만연하게 되며 나아가 이런 현상은 선수의 진학과 더불어 상급학교 및 실업과 프로팀에도 파급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선수 구타와 가혹행위는 현재 체육계 전반의 하위문화 내에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수들의 폭력행위의 파급효과는 매우 강하며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 선수 폭력의 파급효과는 선수 개인에게 대한 파급효과와 사회적 파급효과로 구분된다. 선수 개인에 대한 파급효과로는 지속적 폭력에 반복 노출된 결과 발생하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김정란, 2003; 서영숙과 박옥임, 2003; 김소명, 2004; 박형원, 2004; 장덕희, 2004)에 따르면 한 개인이 장기간 폭력에 노출될 경우 정서적 악영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한 노출은 정신적 파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선수폭력의 피해자 및 일부 가해자의 경우 학생신분이고 운동부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운동부 활동은 학교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교육 차원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 폭력으로 촉발된 일반인의 부정적 시각이 증폭되면 체육의 교육적 적합성에 대한 사회적 논

란을 일으킬 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저 출산에 따른 향후 취학연령층의 단계적 축소가 예상되어 조만간 선수수급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수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수폭력이 일시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라는 토대 하에서 발전해야 할 스포츠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부메랑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급 체육단체들이 국민들로부터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단체의 존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체육단체의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는 선수의 수업 결손을 묵인, 방조, 조장하기도 하며, 성적 조작, 약물 복용, 폭력 등 각종 일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 성적에 집착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비인간적인 훈련, 지도자 및 선배의 구타 및 체벌도 일선 지도자 및 학부모의 암묵적인 인정 하에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학을 위한 승리지상주의의 현실과 어른들의 욕심 속에서 어린 학생 선수들은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거부당하고, 학생으로서의 학습권도 포기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류태호, 2004). 그리고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학습권의 인정을 요구하며 수영 국가대표팀 합숙 훈련에서 이탈한 장희진 선수 사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의 구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타와 체벌과의 모호한 입장을 내세워 구타를 정당화 시키려하는 일부 지도자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타와 체벌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초등학교 체벌에 관한 법규를 <첨부2>에 포함시켰다.

반면 영국, 일본, 독일, 미국 등의 몇몇 나라는 초등학교 학생 운동 선수의 인권과 폭력에 관련된 보호 정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여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책들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 운동 선수의 인권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운동선수협회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지키고 있다. 또한 체육 지도자들이 모든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에 따라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과 선수들의 인권만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어 이를 법적인 제도장치 아래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운동부의 개념보다는 학생 선수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과 후 스포츠클럽화의 개념으로 초등학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를 신체적, 언어적, 성적(성추행), 학습권 침해에 관한 폭력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폭력 실태를 종목별,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제시함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초등학교 선수 폭력 행위 실태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운동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을 신체적, 언어적, 성적 그리고 학습권 침해에 관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폭력의 주체, 폭력의 장소, 폭력의 빈도, 폭력의 이유 등 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초등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논의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문헌 및 학위 학술지 논문, 행정기관과 관련단체에서 발간된 각종 통계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운동부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초등학교 운동부원들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과 인권침해, 폭력과 학습, 폭력의 교육적 부작용, 폭력의 이유와 그 달성 정도, 폭력 유형, 폭력 주체, 폭력 기준, 폭력 장소, 폭력 부위, 폭력 도구, 폭력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성별, 학년별, 종목별로 나누어 인권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1차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 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정책입안자(초등교육과 담당 장학사)에게는 현재 초등학교 운동부원들을 위한 인권보호 정책의 시행여부와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는 운동부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지도자들에게도 운동부 운영실태와 근절대책 그리고 의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에게도 피해경험 유무와 대처방안 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헌조사와 1차 연구결과, 심층면접을 토대로 도출한 2차 개선방안을 보완·수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세미나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증받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최종단계로 보다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개선방안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분석하므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내용에 있어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폭력의 정의

1) 신체적 폭력

단체생활, 훈련과정 및 성적부진의 이유로 신체에 대한 체벌 및 구타하는 행위.

2) 언어적 폭력

지도자나 운동선수 선배들이 학생 운동선수에게 언어적으로 인격모독 및 굴욕감을 주는 행위.

3) 성적 폭력(성추행)

지도자나 운동선수 선배 등이 학생운동선수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

4) 학습권 침해에 관한 폭력

각종 훈련 및 대회출전을 이유로 학생의 고유권한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구타에 대한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정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성적 그리고 학습권 침해에 관한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폭력의 주체, 폭력의 장소, 폭력의 빈도, 폭력의 이유 등 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다.

다.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의 부작용과 영향 분석

폭력에 대한 실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거하여 알아본다.

1) 폭력 실태

폭력과 인권침해, 폭력과 학습, 폭력의 교육적 부작용, 폭력의 이유와 그 달성 정도, 폭력 유형, 폭력 주체, 폭력 기준, 폭력 장소, 폭력 부위, 폭력 도구, 폭력 방법

2) 구타의 부작용

폭력 피해 이후 감정변화

라.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폭력개선 및 근절대책

폭력 개선 및 근절대책에 대해 선다형 질문과 아울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알아본다.

마.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성적 폭력(성추행)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초등학교 운동부내 성적 폭력(성추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에 방 및 근절대책을 알아본다.

바. 초등학교 운동부의 기타 현황

운동시작동기, 운동만족도, 교우(부원)관계, 입상실적, 장래희망직업1일
평균 운동시간, 1주 평균 운동일수, 대회 출전 횟수, 1년 평균 경기일수, 훈
련방법, 합숙소 운영, 합숙기간과 경기력, 운동시간, 학업관심도 및 소홀 원
인, 결손수업 보충 및 처리, 수업참여시간

II. 실태조사 방법

1. 연구설계

1 단계: 연구설계 및 문헌연구

학교폭력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논의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련이 있는 국내외 관련문헌 및 학위 학술지 논문, 행정기관과 관련단체에서 발간된 각종 통계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분석에 활용한다.

2 단계: 예비설문지 작성

책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 모여 초등학교 폭력에 관한 예비 설문지를 작성한다.

3 단계: 설문지 사전 조사

예비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인근초등학교 운동부학생과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한다.

4 단계: 설문지 완성

파일럿 테스트 통해 나타난 조사내용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검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작성한다.

5 단계: 설문지 조사 및 최초 결과 도출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구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구타에 대한 실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구타 개선 및 근절대책, 초등학교 운동부 성폭력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초등학교 운동부의 실질적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될 것이다.

6 단계: 심층 면접 및 2차 결과 도출

설문의 결과와 설립된 초안에 대하여 체육학 전공전문가와 심도 깊은 토의를 거친 후,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학교정책 입안자를 심층 면접하여, 설문조사에서 도출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7 단계: 전문가 세미나

현재까지의 설문지 결과와 심층면접을 토대로 전문가 집단(교수, 연구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최종점검 및 최종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8 단계: 최종 결론 도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15개 시·도(제주 제외) 초등학교 운동선수,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작업은 초등학교 운동선수, 지도자 및 학부모, 학교정책 입안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운동부학생, 지도자, 학부모, 학교체육 정책입안자와 행정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이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시하였다.

2. 표집 방법

본 연구의 설문작업은 2006년 현재 15개 전국의 시·도(제주 제외) 초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심층면접은 정책입안자, 학부모, 현장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우선 각 15개 시·도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총2885¹⁾개중 연구목적에 고려해 약 5%에 해당하는 144개 종목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총 설문응답자는 746명으로 조사되었다.

가. 표본추출의 고려사항 및 추출단계

1) 1단계-지역

표본의 추출은 지역별로는 비례층화 추출법(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수 144개를 <표 2-1>과 같이 배분하였다.

2) 2단계-종목

아래 <표 2-2>와 같이 종목을 단순 무선 표집법(simple random sampling)이용하여 단체종목(축구,야구,농구,핸드볼), 대인종목(태권도,테니스) 및 개인종목(수영,육상,체조,양궁)으로 분류하였다.

3) 3단계-전국 초등학교 운동부 등록선수(제주제외)

1) 2개 혹은 그 이상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운동부 수대로 모집단에 포함시켰다.

15개 시·도 초등학교 운동부 등록선수에 근거하여 단체, 대인, 개인종목을 5:3:2 비율로 나누고 표본수를 근거로 분류한 종목에 따라 배분하였다.

4) 4단계-성별

다음으로 <표 2-3>과 같이 종목별 남녀 초등학교 운동부 등록선수 비율에 따라 각 종목별 표본수를 남녀비율에 맞춰 배분하였다.

5) 5단계-대상학교

마지막으로는 단순 무선 표집법(simple random sampling)을 이용 대상학교를 선정하였다.

<표 2-1> 시도별 운동부 운영 초등학교(모집단)비율 및 표본수

추출지역	모집단	비율(%)	표본수
충남	396	14	20
경기도	381	13	19
경남	283	10	14
강원도	267	9	12
서울	220	8	12
대구	213	8	12
충북	206	7	10
전남	164	6	8
부산	147	5	7
대전	129	4	7
전북	128	4	6
인천	106	4	6
경북	95	3	4
울산	86	3	4
광주	64	2	3
합계	2885	100	144

<표 2-2> 전국 남녀 초등학교 운동부 선수 비율(단체,개인,대인종목 분류시)

항목	등록선수(명)		비율(%)		
	남	여	남	여	합
단체종목	10,427	1,709	42.3%	6.9%	49.2%
개인종목	3,081	2,785	12.5%	11.3%	23.8%
대인종목	4,899	1,749	19.9%	7.1%	27%
합계	24,650		100.00		

<표 2-3> 종목별 표본 수 배분

추출지역	단체종목(8:2)		대인종목(7:3)		개인종목(5:5)		표본수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5	1	3	1	1	1	12
경기도	8	2	4	2	2	1	19
인천	2		1		1		4
대전	3		2		1	1	7
충북	4	1	3		1	1	10
충남	8	2	4	2	2	2	20
부산	3		2		1	1	7
대구	5	1	3	1	1	1	12
울산	3		2		1		6
경북	2		1		1		4
경남	5	1	3	1	2	2	14
강원도	5	1	3	1	1	1	12
광주	2		1				3
전북	3		2		1		6
전남	4		2		1	1	8
합계	62	9	36	8	17	12	144

* <표 1-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가 2885개로 조사되어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모집단 수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전남”의 경우 모집단 2885개중 6%인 164개의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어 표본수가 8개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지역별 표본수 결정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종목별 분류는 앞서 언급했듯이 단체, 개인, 대인종목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2-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운동선수로 등록된 24,650명을 기준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종목별 비율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종목은 총 등록선수 23,650명중 5,866명으로 23.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중 남자가 3,081명으로 12.5%, 여자가 2,785명으로 11.3%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의 경우 표본수 12개중 개인종목 2개를 표본수로 결정하였고 남녀비율에 맞춰 남자종목 1개, 여자종목 1개로 최종 결정하였다. <표 1-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지역별, 종목별, 성별 비율에 맞춰 최종 표본수 분배가 이루어졌다.

3. 조사 도구 및 방법

가.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초등학교 운동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지이다. 본 설문지는 학계전문가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에 의해 설계되어 2006년 7월 25일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자신이 답을 기입(Self-administering)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표본크기의 약 10%에 해당하는 80명의 초등학생 운동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 후 질문 문항 문구의 적절수준과 부적절한 표현 등 사전조사에 참가한 초등학교 운동부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음으로 수정된 설문지는 학계전문가 2인,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와 참여 연구진에 의해 내용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나. 조사기간

- 1) 예비조사: 2006년 7월 18일 ~ 7월 20일
- 2) 설문조사: 2006년 7월 31일 ~ 9월 8일
- 3) 심층면접: 2006년 11월 2일
- 4) 전문가 세미나: 2006년 11월 15일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결과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자료를 Windows용 SPSS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회의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변인을

설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설문지는 예비검사(pilot test)를 통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과 체육학 전문가들이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 전국 15개 시·도(제주제외)에서 수거된 설문지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설문 문항별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종목별, 학년별 폭력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을 경험한 운동부원과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운동부원간의 운동부생활에 걸친 전반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나.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기초로 운동부 학생, 지도자, 학부모, 학교 정책입안자, 체육학 전공교수와 심도 깊은 토의를 거친 후, 이 그룹을 다시 심층면접 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전사(transcription)를 실시하였고, 녹취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양적연구 결과에서 도출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진술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폭력에 관한 전문가 집단 세미나 자료 및 토론 내용을 녹음한 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필요한 부분을 전사하여, 양적연구 결과에서 도출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Ⅲ.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

1. 설문조사 결과

가.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746명의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먼저 남학생이 611명(81.9%), 여학생이 135명(18.2%)으로 전체 초등학교 남녀학생운동선수 비율과 같은 8:2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30.0%), 5학년(37.7%), 6학년(32.2%)이며 5학년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단체종목(69.0%)²⁾이 가장 많았고 개인종목(17.2%)³⁾ 그리고 대인종목(13.8%)⁴⁾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운동시작 시기는 4학년(43.2%)때 가장 많이 시작했으며 그 외에 3학년(21.8%)과 5학년(11.7%)때 주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81%가 장래희망으로 직업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2>의 결과와 같이 응답자의 학교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은 각 문항별로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2) 단체종목-축구, 야구, 농구, 핸드볼

3) 개인종목-수영, 육상, 체조, 양궁

4) 대인종목-태권도, 테니스

<표 3-1> 초등학교 운동부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비율 (빈도)
성별	남	81.9 (611)
	여	18.1 (135)
	합계	100.0 (746)
학년	4학년	30.1 (224)
	5학년	37.7 (281)
	6학년	32.2 (240)
	합계	100.0 (745)
종목별	단체종목	69.0 (515)
	개인종목	17.2 (128)
	대인종목	13.8 (103)
	합계	100.0 (746)
운동시작	1학년	6.2 (46)
	2학년	10.0 (74)
	3학년	21.9 (163)
	4학년	43.2 (322)
	5학년	15.7 (117)
	6학년	2.8 (21)
	합계	100.0 (743)
장래희망	전문직	14.6 (107)
	사무직	1.0 (7)
	자영업	1.6 (12)
	운동선수	82.8 (606)
	합계	100.0 (732)

<표 3-2> 초등학교 운동부원의 학교생활에 관한 일반적 특성

구 분		비율(빈도)
운동시작 동기	내가 좋아서	68.5 (509)
	지도자권유	12.5 (93)
	부모님권유	10.2 (76)
	친구권유	3.5 (26)
	기타	5.2 (39)
	합계	100.0 (743)
중학교 진학 후 운동지속여부	예	83.2 (596)
	아니오	16.8 (148)
	합계	100.0 (744)
운동지속을 원하지 않는 이유	운동이 힘들어서	39.7 (56)
	공부하고 싶어서	21.3 (30)
	부모님의 반대	26.2 (37)
	운동부선배가 무서워서	1.4 (2)
	지도자가 무서워서	6.4 (9)
	기타	5.0 (7)
	합계	100.0 (141)
입상성적경험 (전국대회규모)	1등	20.0 (149)
	2등	19.8 (148)
	3등	19.2 (143)
	없음	56.0 (418)
합숙경험	있음	47.0 (341)
	없음	53.0 (384)
	합계	100.0 (725)
일일평균운동시간 (시합이 없을 때)	1~2시간	28.7 (203)
	3~5시간	58.7 (422)
	6~8시간	12.6 (108)
	합계	100.0 (733)
일일평균운동시간 (시합이 있을 때)	1~2시간	33.9 (248)
	3~5시간	51.1 (371)
	6~9시간	15.0 (112)
	합계	100.0 (723)
현재 운동 연습 시간	너무 길다	3.4 (25)
	길다	15.1 (111)
	알맞다	77.3 (569)
	짧다	2.9 (21)
	너무 짧다	1.4 (10)
	합계	100.0 (736)

나.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운동부 생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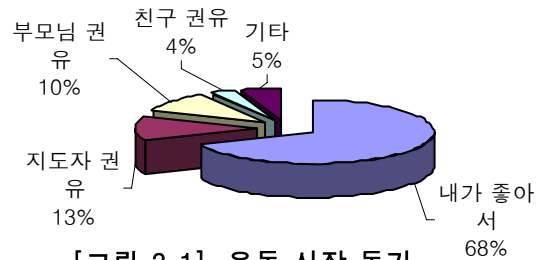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746명의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에 대한 운동부 생활에 관한 실태는 <표 3-3>과 같다. [문항 III-1]은 “운동선수는 공부보다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평균=2.61)”라는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운동부원은 138명(18.5%)에 불과했다. 이는 운동선수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 III-2]는 “나는 수업에 꼭 가고 싶다”(평균=2.89)라는 질문에 비교적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문항 III-3,4,5,6]은 선배(평균=1.41), 지도자(평균=1.47), 부모님(평균=1.57), 담임선생님(평균=1.32)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은 비교적 낮은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 의해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문항 III-7]은 “공부하기 싫어서 수업에 안 들어간다(평균=1.47)”의 응답도 비교적 낮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항 III-8,9]는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 포기 욕구(평균=2.17)와 학교에 가기 싫다(평균=1.94)”라는 응답은 비교적 폭력 피해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고 싶다”의 응답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응답자는 457명(61.7%)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는 98명(13.1%)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다”는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513명(69.6%)으로 나타났다. 문항 [III-14,15]는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 포기 욕구(평균=2.12)와 학교에 가기 싫다(평균=1.97)”에 대한 응답도 언어적 폭력 피해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운동을 그만 두게 하고 싶은 마음과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III-10,11,13]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시합성적 향상(평균=2.31), 승리에 대한 집착 상승(평균=3.20) 그리고 운동 집착 상승(평균=2.90)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으면 시합에서 꼭 이기고 싶어진다”의 응답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29명(44.1%)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시험에서조차도 성인들과 같이 꼭 이겨야만 된다는 “승리 지상주의”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III-16,17,18]은 “지도자(평균=4.01), 운동부 생활(평균=4.04) 그리고 학교생활(평균=3.73)이 좋다”라는 응답은 비교적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는 총 응답자들은 지도자와 운동부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의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판단된다.

<표 3-3> 운동부 생활에 관한 실태

구 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1	운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	743	2.61	1.110
2	수업에 꼭 참여하고 싶음	742	2.89	1.034
3	선배들의 수업 불참여 강요	737	1.41	.808
4	지도자의 수업 불참여 강요	740	1.47	.841
5	부모님의 수업 불참여 강요	741	1.57	.923
6	담임선생님의 수업 불참여 강요	740	1.32	.706
7	공부하기 싫어 수업 불참여	741	1.47	.829
8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 포기 욕구	741	2.17	1.160
9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학교가기 싫음	737	1.94	1.112
10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시험성적 향상	732	2.31	1.177
11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승리 집착	732	3.20	1.468
12	운동부 후배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737	2.44	1.264
13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 집착	735	2.90	1.275
14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 포기 욕구	736	2.12	1.234
15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해 학교가기 싫음	738	1.97	1.189
16	코치·감독선생님에 대한 만족	740	4.01	1.098
17	운동부생활에 대한 만족	738	4.04	1.116
18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742	3.73	1.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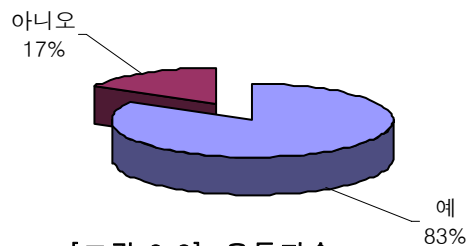
문 I-6) 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림 3-1] 운동 시작 동기

“운동시작동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총 응답자 743명 중 509명(68.5%)은 자신의 선택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지도자의 권유 93명(12.5%)명과 부모님의 권유 76명(10.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신이 좋아서 운동부원이 되길 선택한 것으로 누구의 강요보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 I-7) 중학교에 가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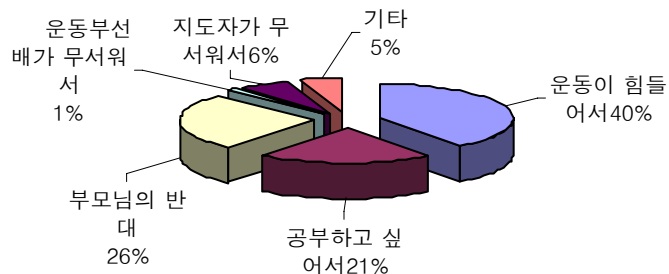


[그림 3-2] 운동지속

“중학교 진학 후 운동지속 여부”에 관한 응답 결과는 [그림 3-2]와 같이 나타났다. 총 응답자 744명 중 596명(83.2%)이 “예”라고 대답하였고 “아니요” 즉 운동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는 148명(16.8%)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진학 후 운동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148명을

성별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남학생(18%)보다는 여학생(27%)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종목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개인종목(27%)의 경우 단체종목(18%)과 대인종목(21%)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응답자 비율이 중학교 진학 후 운동을 포기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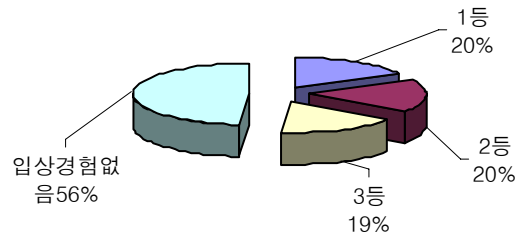
문 I-7-1) 만일 “아니요”라면 왜죠?



[그림 3-3] 운동지속 반대 이유

중학교 진학 후 운동을 그만 두고 싶은 이유는 [그림 3-3]과 같이 나타났다. 총 응답자 148명중 40%의 응답자는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중학교 진학 후 “공부에만 열중하고 싶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자는 21%, “부모님의 반대로”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자는 26%로 나타났다. 그밖에 지도자(6%)와 운동부선배(1%)로 인해 그만두고 싶다는 경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나”는 문항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한 응답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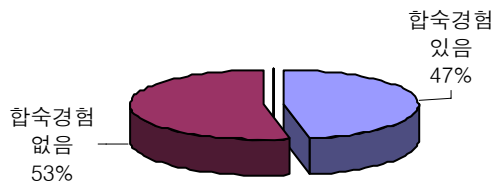
문 I-8.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면서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팀이 전국규모 대회 3위 안에 든 경험이 있나요?



[그림 3-4] 입상성적경험(전국대회규모)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면서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팀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나” 는 [그림 3-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 56%의 초등학교 운동부원은 입상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등(20%), 2등(20%) 그리고 3등(19%)의 비율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문 I-9) 현재 운동부 활동을 하면서 합숙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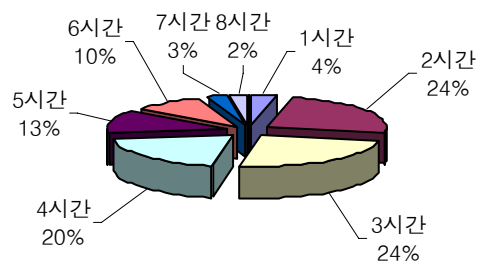
[그림 3-5] 합숙경험

<표 3-4> 합숙일수

구 분	비율(빈도)
1~7일	40.8 (139)
8~30일	43.1 (147)
31~120일	7.6 (26)
120~365일	8.5 (29)
합계	100.0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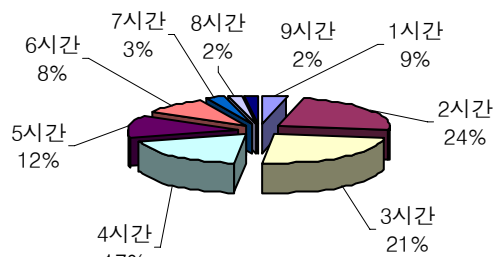
“합숙경험”에 대한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총 응답자 725명 중 341명 (47.0%)이 “합숙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합숙경험이 있는 총 응답자 중 성별에 따른 분류는 남학생의 49%가 경험이 있고 여학생은 36%가 합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대인종목의 경우 54%의 응답자가 합숙경험이 있고 단체종목(47%) 그리고 개인종목 (35%)순으로 나타났다. <표 3-4>와 같이 합숙경험이 있는 총 응답자중 286명(83.9%)은 년 중 합숙일수는 30일 이하로 나타났으며 120일 이상인 응답자도 29명(8.5%)으로 나타났다.

문 I-10-1) 하루평균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합이 없을 때)



[그림 3-6] 일일평균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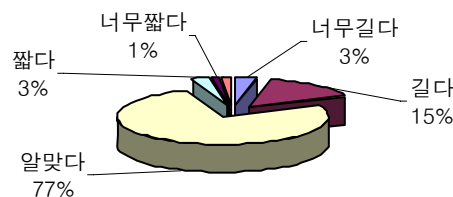
문 I-10-1) 하루평균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합이 있을 때)



[그림 3-7] 일일평균운동시간

하루 평균 운동시간을 "시합이 없을 때"와 "시합이 있을 때"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3-6]과 [그림 3-7]과 같다. "시합이 없을 때"는 총 응답자 733명 중 72%가 4시간이하로 연습을 하고 있으며 28%의 응답자는 5시간 이상을 연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합이 있을 때"는 응답자의 70%가 4시간 이하로 연습을 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5시간 이상을 연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점은 "시합이 있을 때" 총 응답자중 16명(2.1%)의 응답자가 9시간이상을 연습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6명의 응답자는 주로 야구와 테니스 종목 운동부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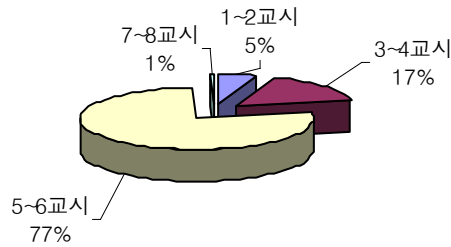
문 I-11) 하루 운동 연습시간이 알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림 3-8] 적정운동시간

“하루 운동시간이 적절한가”의 조사결과는 [그림 3-8]과 같이 나타났다. 총 응답자 736명 중 569명(77.3%)이 현재 운동 연습시간은 “알맞다”라고 응답하였고 136명(18.5%)은 “길다” 혹은 “너무길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I-12) 하루에 몇 교시(시간) 수업에 들어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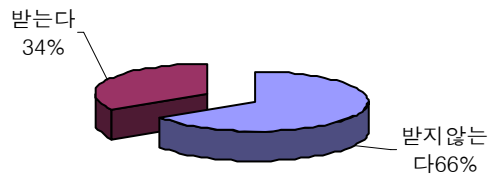
[그림 3-9] 일일평균참여수업시간

<표 3-5> 일일 평균 수업 참여시간

구분	비율(빈도)
1~2교시	5.1 (38)
3~4교시	16.5 (123)
5~6교시	76.8 (573)
7~8교시	.5 (4)
무응답	1.1 (8)
합계	100.0 (746)

“일일 평균 수업 참여 시간”에 관한 조사결과는 [그림 3-9]와 같다. 총 응답자 738명 중 573명(76.8%)이 5~6교시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61명(21.6%)은 3~4교시 혹은 1~2교시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참여시간을 종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체종목 총 응답자 515명 중 정상적인 수업참여시간 5~6교시를 참여하는 학생운동 선수는 429명(83.3%)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종목 총 응답자 128명 중 77명(60.2%)과 대인종목 총 응답자 103명 중 67명(65.0%)만이 정상적인 수업 참여시간 5~6교시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종목의 경우 교육부 지침대로 수업참여시간을 잘 지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종목과 대인종목의 경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I-13) 만일 시험으로 인하여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보충수업을 받고 있나요?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고 있나요?



[그림 3-10] 보충수업

<표 3-6> 보충수업 실시자

구 분	비율(빈도)
학교 선생님	43.7 (108)
운동부 선생님	22.3 (55)
일반학급친구	4.5 (11)
방과 후 부모님 혹은 과외선생님	29.6 (73)
합계	100.0 (247)

“시험으로 인해 수업을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가”라는 결과는 [그림 3-10]과 같다. 총 응답자 730명 중 483명(66%)은 “보충수업을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247명(34%)은 “보충수업을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만일 받는다면 보충수업을 누구에게 받는가”라는 결과는 <표 3-6>과 같다. “받는다”라고 응답한 247명 중 108명(43.7%)은 “학교선생님에게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방과 후 부모님 혹은 과외선생님에게 받는다는 응답은 73명(29.6%)으로 나타났다.

다.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실태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체벌에 관한 실태는 종종 언론매체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7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육상부 여자선수의 고백을 기사화 하였다. 이 초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밝힌 폭력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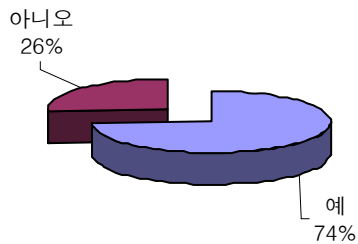
“벌써 6학년이다. 운동 시작한 지 3년이다. 힘이 너무 든다. 키 좀 크고 잘 뛰니까 육상부 들어오라고 해서 운동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싫고 두렵다. 오늘도 맞았다. 자세가 좋지 않고, 기록도 안 나오기 때문이란다. 평소에는 자상한 선생님이 화날 땐 정말 괴물로 변한다. 운동장 옆에 있는 겨울철 훈련 시설인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가더니 엎드려뺨쳐를 시킨 뒤 허들의 나무 막대기로 때린다. 3대 맞으니까 눈물이 핑 돈다.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다. 눈물이 불을 타고 흐른다. 다른 아이 두 명도 운다. 손바닥을 맞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참는다. 가장 아플 때는 뺨을 맞을 때다. 몽둥이로 맞을 때보다 더 슬프다. 연습할 때는 한달에 두세 번 이렇게 매를 맞는다. 운동장에서는 거의 때리지 않는다. 경기에 나갔을 때도 때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다,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 같다. 그런데 맞을 때는 선생님이 밉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다. 차라리 때리지 말고 기합을 주면 좋을 텐데. 기합을 받으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니까. 때리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육상을 가르쳐 줄 선생님은 없을까?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 끝나면 학원 다니고 군 것질하면서 어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운동을 그만두고 싶지만 코치 선생님이나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 줄립다.”

또한 어느 초등학교 축구 경기 중 하프 타임 때 발생했던 상황을 기사화 하였다. 초등학교 경기 하프타임. 한쪽 팀 감독이 애들을 라커룸에 빙 둘러 설치된 의자에 앉히더니 “내일 결승 못 가도 좋아. 오늘 뛰란 말이야. 끝날 때 그냥 걸어 나오는 새끼 있으면 죽은 줄 알아. 다리가 부러져도 막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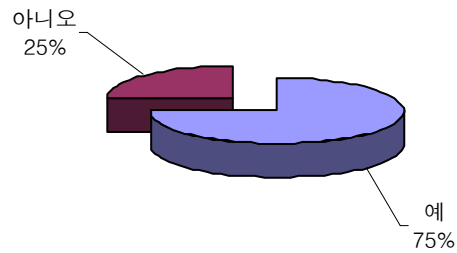
말이야. 이 돌대가리 ×××야.” 흔히 유소년 축구는 축구 입문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축구에 흥미를 갖게 하고, 즐겁게 공을 차며, 기술 축구를 지향해야 한다”는게 원칙으로 교본에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사の内容과 같이 상명하복의 군대식 분위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에 상처만 안기고 있다. 또한 감독은 한 선수를 지목하며 “너 때문에 안 되잖아. 돌대가리 같은 놈”이라며 어린학생을 다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언어적 폭력도 신체적 구타에 못지 않게 어린학생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746명의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실태는 <표 3-7>과 같다. 먼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운동선수는 총 응답자 746명 중 554명(74.3%)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운동선수는 총 응답자 중 559명(74.9%)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중 3명은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단체종목 총 응답자 515명 중 417명(81%)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종목 총 응답자 128명 중 64명(50%)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77명(60.2%)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종목의 경우 총 응답자 103명 중 68명(66%)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65명(63.1%)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의 비율은 단체종목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총 응답자 611명 중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485명(79.4%),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481명(78.7%)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총 응답자 135명 중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69명(51.1%)이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78명(57.8%)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11명(14.9%)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적 폭력 피해는 2006.1.31 선고2005도6791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학생도 포함시켰다.

<표 3-7> 초등학교 운동부원의 폭력 피해 실태

폭력유형 \ 폭력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언어적 폭력	74.3 (554)	25.7 (192)
신체적 폭력	74.9 (559)	25.1 (187)
성적 폭력	14.9 (111)	85.1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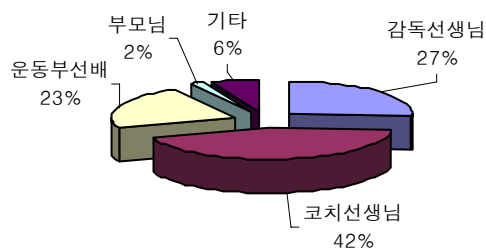


[그림 3-11]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그림 3-12]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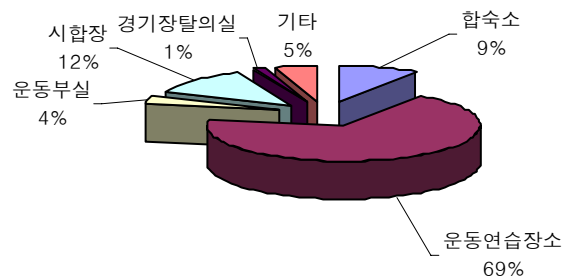
문 II-3) 여러분은 운동과 관련하여 주로 누구에게 욕을 먹나요?



[그림 3-13] 언어적 폭력 가해자

“언어적 폭력 가해자가 누구인가”의 결과는 [그림 3-13]과 같다. 총 응답자 중 255명(42.7%)은 코치선생님에 의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59명(26.6%)은 감독선생님으로 나타났고 135명(22.6%)은 운동부 선배에 의해 언어적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대부분은 운동부 친구로부터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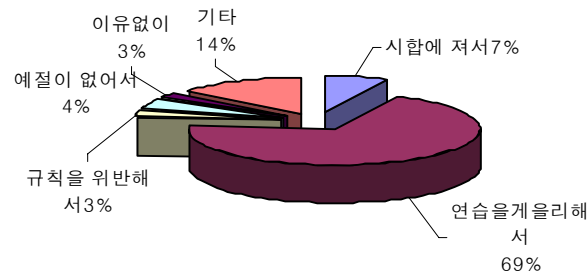
문 II-4)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나요?



[그림 3-14] 언어적 폭력 피해 장소

“언어적 폭력 피해 장소”는 [그림 3-14]와 같다. 총 응답자 중 403명 (69.3%)이 주로 운동 연습하는 장소(운동장 혹은 체육관)에서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그 밖에 “시합장”이 72명(12.2%), 합숙소 56명(9.5%) 그리고 운동부실 21명(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응답은 교실, 전지훈련장, 집 등 다양한 곳에서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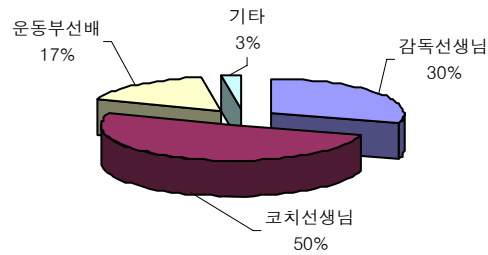
문 II-5) 여러분은 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나요?



[그림 3-15] 언어적 폭력 피해 이유

“언어적 폭력 피해 이유”는 [그림 3-15]와 같다.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중 410명(69.6%)은 “연습을 게을리해서”라고 나타났고 “시합에 져서” 41명(7.0%), “예절이 없어서”는 26명(4.4%), “규칙을 위반해서” 16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 응답의 비율이 많은 것은 대부분 문항 속에 속해있는 답을 언어적 표현만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합을 못해서” 혹은 “말을 안 들어서”등 언어적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문항속에 포함 되어있는 것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유없이 언어적 폭력 피해를 받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운동선수도 13명(2.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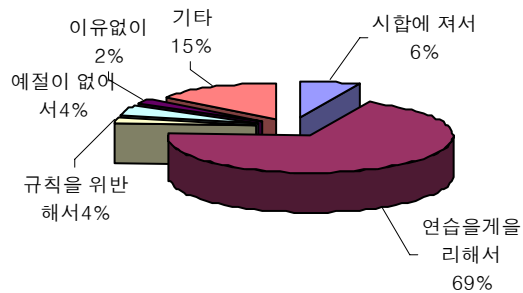
문 II-6) 여러분은 운동부에서 맞았다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맞나요?



[그림 3-16] 신체적 폭력 가해자

“신체적 폭력 가해자가 주로 누구인가”의 결과는 [그림 3-16]과 같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552명 중 281명(50.9%)은 주로 “코치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감독선생님”은 163명(29.5%)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운동부선배”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받는 응답자는 94명(17.0%)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의 대부분은 “친구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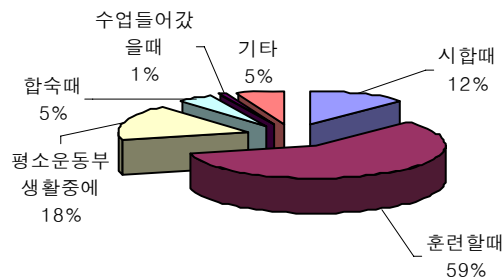
문 II-7) 여러분은 감독, 코치선생님에게 왜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그림 3-17] 신체적 폭력 피해 이유

“신체적 폭력 피해 이유”는 [그림 3-17]과 같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중 409명(68.5%)은 주로 “연습을 게을리해서”라고 나타났고 “시합에 져서” 34명(5.7%), “예절이 없어서”는 28명(4.7%), “규칙을 위반해서” 22명(3.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문항 속에 속해있는 답을 언어적 표현만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합을 못해서” 혹은 “말을 안 들어서”등 언어적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문항속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신체적 폭력 피해를 받는다”라고 응답한 운동부원도 12명(2.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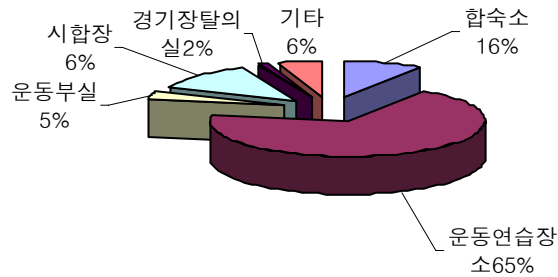
문 II-8) 만일 여러분이 맞았다면 언제 가장 많이 맞아요?



[그림 3-18] 신체적 폭력 피해 시기

“신체적 폭력 피해 시기”는 [그림 3-18]과 같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중 348명(58.5%)은 주로 “훈련할 때”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105명(17.6%)은 “평소 운동부 생활 중에”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73명(12.3%)은 “시합 때” 주로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합숙 때”라고 응답한 운동부원도 27명(4.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주로 “시합이 끝나고” 혹은 “쉬는 시간에”라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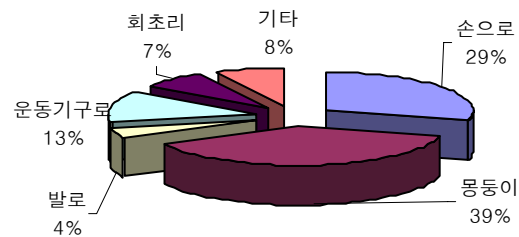
문 II-9) 여러분은 어디서 가장 많이 맞나요?



[그림 3-19] 신체적 폭력 피해 장소

“신체적 폭력 피해 장소”는 [그림 3-19]와 같다. 총 응답자 중 381명 (65.2%)은 주로 운동 연습하는 장소(운동장 혹은 체육관)로 나타났으며 “합숙소” 93명(15.9%), “시합하는 경기장”이 34명(5.8%), 그리고 “운동부실” 31명(5.3%), “경기장 탈의실” 13명(2.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응답은 전지훈련장, 집 등 다양한 곳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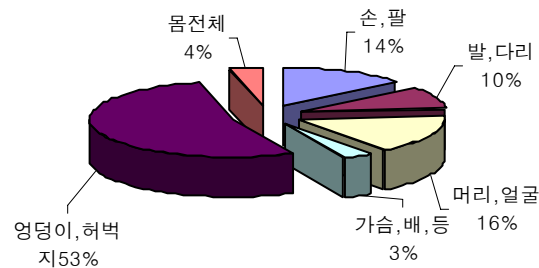
문 II-10) 여러분이 맞을 때 무엇으로 가장 많이 맞나요?



[그림 3-20] 신체적 폭력 피해 도구

“신체적 폭력 피해 도구”는 [그림 3-20]과 같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중 231명(38.6%)은 주로 “몽둥이”로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4명(29.1%)은 “손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운동기구로” 79명(13.2%), “회초리” 43명(7.2%), “발로” 26명(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운동기구”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였다. 예를 들면 야구부원은 “방망이” 혹은 테니스부원은 “테니스라켓”등으로 기입하였다. 그러나 “죽도” 혹은 “하키스틱”과 같은 위험한 기구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을 받은 학생운동선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II-11) 여러분은 맞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맞아요?



[그림 3-21] 신체적 폭력 피해 부위

“신체적 폭력 피해 부위”는 [그림 3-21]과 같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중 316명(52.8%)은 주로 “엉덩이 혹은 허벅지”가 피해 부위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기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머리 혹은 얼굴”은 96명(16.1%)으로 나타났으며 “손 혹은 팔”이 85명(14.2%), “발 혹은 다리” 58명(9.7%), 몸 전체 23명(3.8%), “가슴, 배, 등” 20명(3.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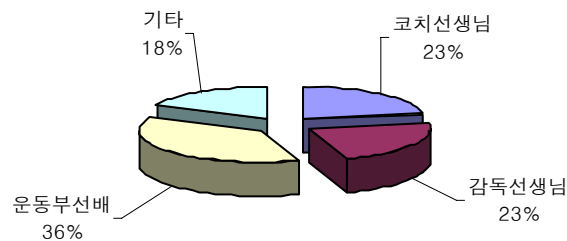
문 II-12)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맞나요?

<표 3-8>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

구 분	비율(빈도)
1~2회	34.5 (257)
3~4회	18.2 (136)
5~6회	8.3 (62)
7~10회	9.3 (69)
11~20회	4.0 (30)
21회 이상	1.1 (8)
합계	75.3 (562)
무응답	24.7 (184)
총합계	100.0 (746)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신체적 폭력 피해를 받는가”는 <표 3-8>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중 257명(34.5%)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나타났고 136명(18.2%)이 3~4회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주당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의 결과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횟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주일에 21회 이상도 8명(1.1%)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수의 학생운동 선수들은 주기적이고 상당한 양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 II-13) 운동부에서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창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림 3-22] 성적 폭력 가해자

<표 3-9> 성적 폭력 가해자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합계(%)
감독선생님	21	4	25 (22.5)
코치선생님	22	3	25 (22.5)
운동부선배	41	0	41 (36.9)
기타	19	1	20 (18.0)
합계	103	8	111 (100.0)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라는 결과는 [그림 3-22]와 같다.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11명 중 50명(45%)은 지도자에 의해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운동부선배(36%)에 의해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총 응답자 135명 중 8명이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명은 감독선생님에 의한 것이고 3명은 코치선생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지도자에 의해 성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 II-14) 만일 창피했다면 어디를 만졌는지
아래 그림의 위치에 (O)표 하여 주세요

<표 3-10> 성적 폭력 피해 부위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합계(%)
가슴	22	3	25 (22.5)
성기	25	0	25 (22.5)
엉덩이	37	4	41 (36.9)
기타	19	1	20 (18.0)
합계	103	8	111 (100.0)

“성적 폭력 피해 부위”의 결과는 <표 3-10>과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성기”부위가 25(22.5%)명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가슴” 3명, “엉덩이” 4명으로 나타났다.

문 II-15) 주로 여러분의 몸을 어디서 만져서 창피했었나요?

<표 3-11> 성적 폭력 피해 장소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합계(%)
합숙소	24	4	28 (25.6)
운동 연습하는 곳	37	1	38 (35.1)
운동부실	12	2	14 (12.9)
화장실	7	0	7 (6.4)
경기장의 탈의실	7	0	7 (6.4)
기타	16	1	17 (13.6)
합계	103	8	111 (100.0)

“성적 폭력 피해 장소”의 결과는 <표 3-11>과 같이 나타났다.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111명 중 38명(35.1%)은 “운동 연습하는 곳(운동장 혹은 체육관등)”에서 피해를 경험했고 여학생의 경우 성적 피해를 경험한 총 8명의 중 4명(50%)이 “합숙소”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II-16) 이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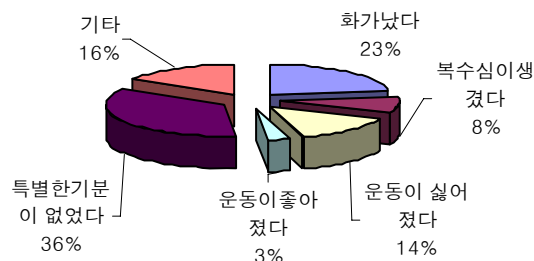
<표 3-12> 성적 폭력 피해 후 기분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합계(%)
창피했다	45	4	49(44.2)
화가났다	33	3	36(32.4)
살고 싶지 않았다	8	0	8(7.2)
운동을 그만 두고 싶었다	6	1	7(6.3)
기타	11	0	11(9.9)
합계	103	8	111(100.0)

“성적 폭력 피해 후 기분”의 결과는 <표 3-12>와 같이 나타났다. 성적 폭

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111명 중 49명(44.2%)은 “창피했다”라고 응답하였고 36명(32.4%)은 “화가났다”라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살고 싶지 않았다”의 응답자는 8명으로 나타났고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1명, 남학생은 6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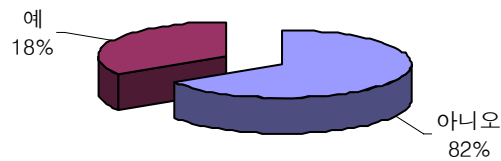
문 III-19) 여러분은 코치, 감독선생님 혹은
선배들로부터 맞은 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림 3-23] 신체적 폭력 피해 후 기분

“지도자들 혹은 선배들에게 신체적 폭력 피해 후 기분”의 결과는 [그림 3-23]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 후 “특별한 기분이 없었다”의 응답자는 240명(3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화가났다” 156명(23.0%), “운동이 싫어졌다” 98명(14.4%), “복수심이 생겼다” 54명(8.0%)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이 좋아졌다”라는 응답자는 20명(2.9%)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응답의 대부분은 “더 잘 해야겠다”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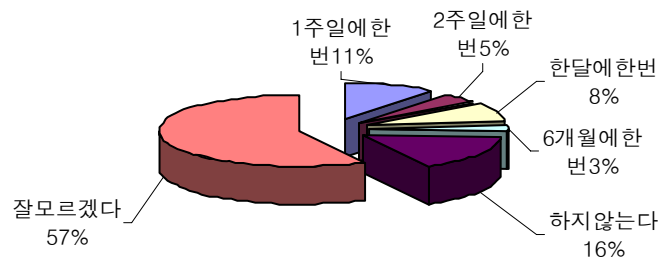
문 III-20) 만일 여러분이 코치, 감독선생님 혹은
선배들로부터 맞은 후 부모님께 이야기 하나요?



[그림 3-24] 신체적 폭력 피해 후
보고

“지도자 혹은 선배들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부모님께 이야기하나”의 결과는 [그림 3-24]와 같다. 총 응답자의 82% 폭력 피해 후 부모님께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18%만이 폭력 피해 후 부모님께 이야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 피해가 지도자와 선수 혹은 선배와 후배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문 III-21) 부모님은 코치, 감독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면담을 하나요?



[그림 3-25] 지도자와 부모님간의 면담

“부모님과 지도자간의 면담이 이루어지나”의 결과는 [그림 3-25]와 같다. 총 응답자의 57%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16%로 나타나 운동부원들이 부모님과 지도자간의 대화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주일에 한번”은 11%, “한달에 한번” 8%, “2주일에 한번” 8%, 6개월에 한번” 3% 순으로 나타났다.

라. 성별, 종목별, 학년별 폭력 실태 비교분석

1) 성별에 따른 폭력 실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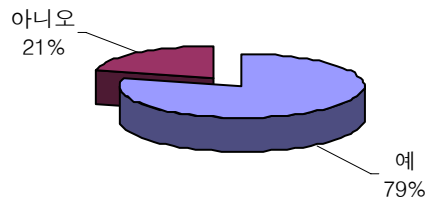
다음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언어적, 지적, 성적 폭력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가) 신체적 폭력 피해 실태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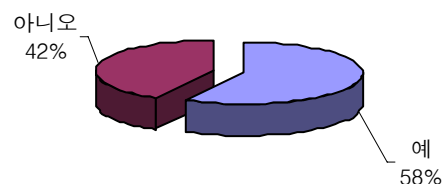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성별에 따른 비교는 <표 3-13>과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611명 중 481명(78.7%)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135명 중 78명(57.8%)이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학생 운동부원 비율이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학생 운동부원 비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 운동부원이 신체적 폭력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13>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성별 \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남학생 운동부원	78.7 (481)	21.3 (130)
여학생 운동부원	57.8 (78)	42.2 (57)



[그림 3-26] 신체적 폭력 피해 결과 (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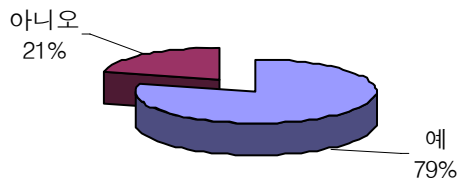
[그림 3-27] 신체적 폭력 피해 결과 (여학생)

나) 언어적 폭력 피해 실태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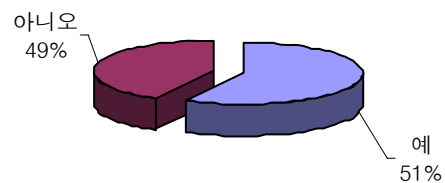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성별에 따른 비교는 <표 3-14>와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611명 중 485명(79.4%)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135명 중 69명(51.1%)이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남학생 운동부원 비율이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학생 운동부원 비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 운동부원이 언어적 폭력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14> 성별에 따른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성별 \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남학생 운동부원	79.4 (485)	20.6 (125)
여학생 운동부원	51.1 (69)	48.9 (66)



[그림 3-28] 언어적 폭력 피해 결과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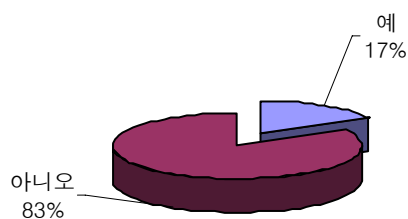
[그림 3-29] 언어적 폭력 피해 결과 (남학생)

다)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실태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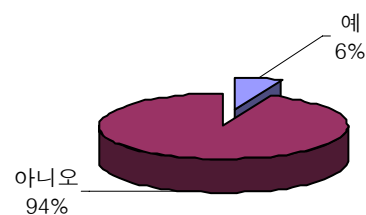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성별에 따른 비교는 <표 3-15>와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611명 중 103명(16.9%)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135명 중 8명(5.9%)이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운동부원인 경우 2006년 1월31일(선고2005도6791) 대법원 판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근거로 포함시켰다. 남학생 운동부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누군가가 만지면 “창피하다”(44%) 혹은 “화가 난다”(32%)라는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운동부원인 전체 여학생 중 성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5.9%이며 이 비율은 낮지만 지도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표 3-15>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성별 \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남학생 운동부원	16.9 (103)	83.1 (508)
여학생 운동부원	5.9 (8)	94.1 (127)



[그림 3-30] 성적 폭력 피해 결과 (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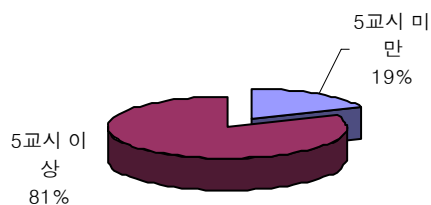
[그림 3-31] 성적 폭력 피해 결과 (여학생)

라) 평균 수업참여 시간 실태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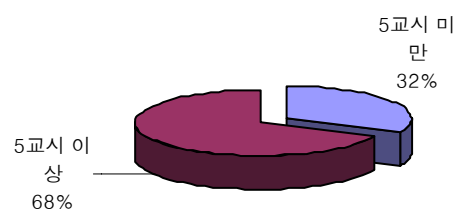
수업참여 피해를 경험한 성별에 따른 비교는 <표 3-16>와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605명 중 118명(19.5%)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 운동부원 총 응답자 133명 중 43명(32.3%)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남학생 운동부원보다 여학생 운동부원의 수업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법상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아직도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년 중 합숙훈련과 초과된 운동량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16> 성별에 따른 평균 수업참여 시간 실태 비교

성별	피해경험	5교시 미만 비율(빈도)	5교시 이상 비율(빈도)
남학생 운동부원		19.5 (118)	80.5 (487)
여학생 운동부원		32.3 (43)	67.7 (90)



[그림 3-32] 수업참여 실태 결과(남학생)



[그림 3-33] 수업참여 실태 결과(여학생)

2) 종목별 폭력 실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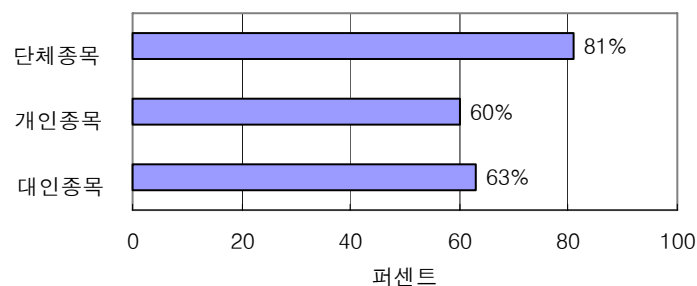
다음은 종목별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그리고 수업참여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가) 신체적 폭력 피해 실태 비교 분석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종목별 비교는 <표 3-17>과 같이 나타났다. 단체종목 총 응답자 515명 중 416명(80.8%)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종목 총 응답자 103명 중 65명(63.1%)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종목의 경우 총 응답자 128명 중 77명(60.2%)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종목 학생운동선수일 수록 신체적 폭력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인종목과 개인 종목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종목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성별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단체종목	80.8 (416)	19.2 (99)
	개인종목	60.2 (77)	39.8 (51)
	대인종목	63.1 (65)	36.9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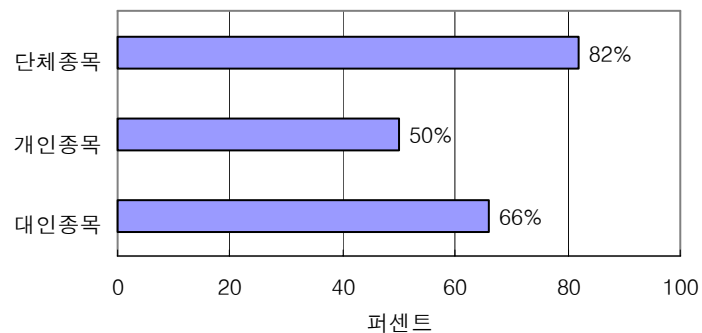
[그림 3-34] 종목별 신체적 폭력 피해 비교

나) 언어적 폭력 피해 실태 비교 분석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종목별 비교는 <표 3-18>과 같이 나타났다. 단체종목 총 응답자 515명 중 422명(81.9%)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종목 총 응답자 128명 중 64명(50.0%)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종목의 경우 총 응답자 103명 중 68명(66.0%)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종목 학생운동선수일수록 언어적 폭력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인종목과 개인종목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종목의 경우 언어적 폭력의 비율이 신체적 폭력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종목별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성별 \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단체종목	81.9 (422)	18.1 (93)
개인종목	50.0 (64)	50.0 (64)
대인종목	66.0 (68)	34.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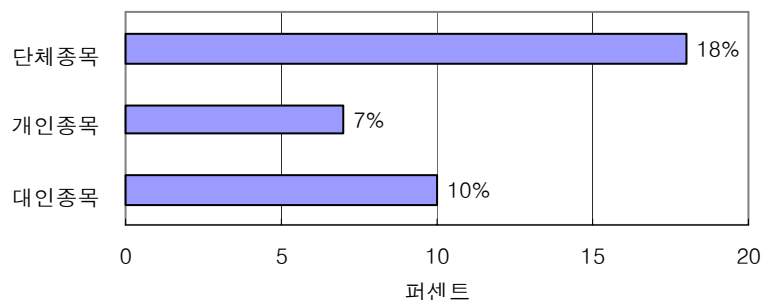
[그림 3-35] 종목별 언어적 폭력 피해 비교

다)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실태 비교 분석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종목별 비교는 <표 3-19>와 같이 나타났다. 단체종목 총 응답자 515명 중 92명(17.9%)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종목 총 응답자 127명 중 9명(7.1%)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종목 총 응답자 103명 중 10명(9.7%)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종목 학생운동선수일수록 성적 폭력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인종목과 개인종목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종목의 경우 언어적 폭력의 비율이 신체적 폭력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운동부원 총 135명 중 8명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8명 중 6명이 단체종목 학생운동선수이며 개인종목과 대인종목은 각각 1명씩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종목에서 성적 폭력을 경험한 6명의 여학생 운동부원의 경우 가해자는 감독선생님이 4명, 코치선생님이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19> 종목별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경험 비교

성별 \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단체종목	17.9 (92)	82.1 (423)
개인종목	7.1 (9)	92.9 (118)
대인종목	9.7 (10)	90.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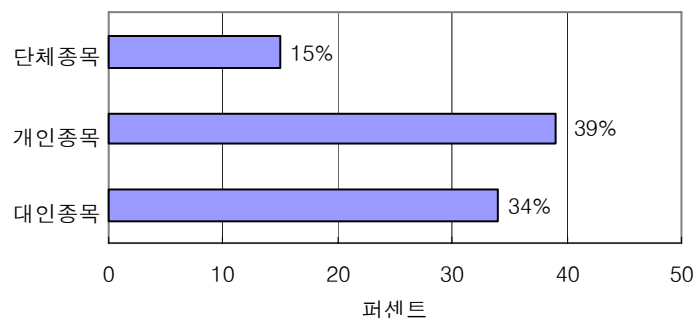
[그림 3-36] 종목별 성적 폭력(성추행)피해 비교

라) 평균 수업참여 시간 실태 비교 분석

평균 수업 참여 시간 실태의 종목별 비교는 <표 3-20>과 같이 나타났다. 단체종목 총 응답자 509명 중 77명(15.1%), 개인종목 총 응답자 127명 중 50명(39.1%)이 5교시 미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인종목 총 응답자 101명 중 34명(33.7%)이 5교시 미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종목과 대인종목이 상대적으로 단체종목에 비해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세부종목별로 살펴보면 대인종목의 “테니스”가 총 응답자 중 46.3%의 학생운동선수가 5교시 미만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종목의 경우 “수영”이 45.0%, “육상”이 44.3%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종목의 경우 “농구”가 29.3%로 가장 수업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구”가 8.1%, “축구”가 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종목별 평균 수업 참여 시간 비교

성별 \ 피해경험	5교시 미만	5교시 이상
	비율(빈도)	비율(빈도)
단체종목	15.1 (77)	84.9 (432)
개인종목	39.1 (50)	61.9 (78)
대인종목	33.7 (34)	63.3 (67)



[그림 3-37] 종목별 정규수업 참여 비교

3) 학년별 폭력 실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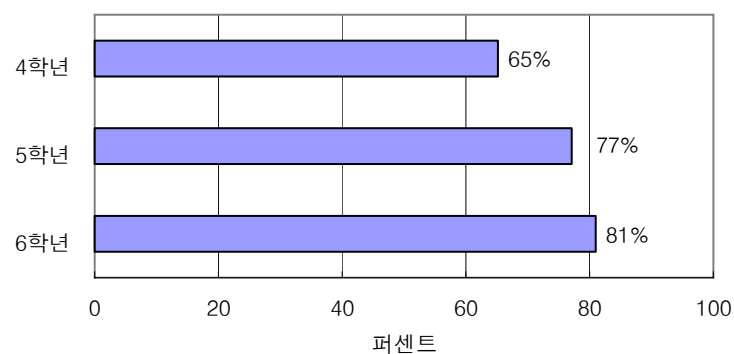
다음은 학년별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그리고 수업참여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가) 신체적 폭력 피해 실태 비교 분석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년별 비교는 <표 3-21>과 같이 나타났다. 4학년 총 응답자 224명 중 146명(65.2%)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총 응답자 281명 중 216명(76.9%)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경우 총 응답자 240명 중 195명(81.3%)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1> 학년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학년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4학년		65.2 (146)	34.8 (78)
5학년		76.9 (216)	23.1 (65)
6학년		81.3 (195)	19.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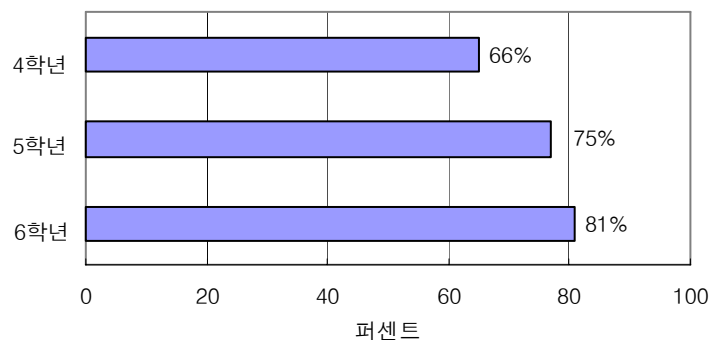
[그림 3-38] 학년별 신체적 폭력 피해 비교

나) 언어적 폭력 피해 실태 비교 분석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년별 비교는 <표 3-22>와 같이 나타났다. 4학년 총 응답자 224명 중 148명(66.1%)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총 응답자 281명 중 210명(74.7%)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경우 총 응답자 240명 중 195명(81.3%)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2> 학년별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 비교

학년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4학년		66.1 (148)	33.9 (76)
5학년		74.7 (210)	25.3 (71)
6학년		81.3 (195)	19.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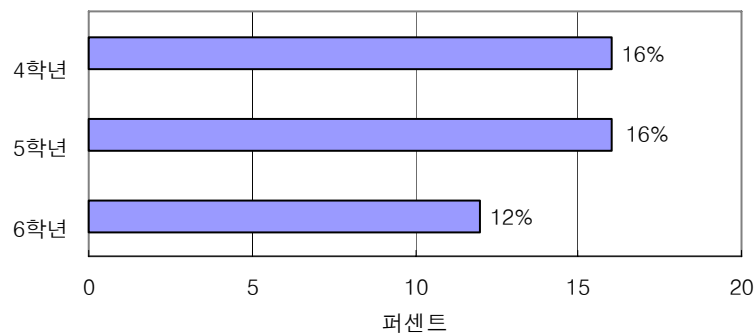
[그림 3-39] 학년별 언어적 폭력 피해 비교

다)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실태 비교 분석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년별 비교는 <표 3-23>과 같이 나타났다. 4학년 총 응답자 224명 중 36명(16.1%)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총 응답자 280명 중 45명(16.1%)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경우 총 응답자 240명 중 30명(12.5%)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 즉 성추행 피해 경험의 경우 4학년과 5학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저학년의 피해가 고학년보다 좀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3> 학년별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경험 비교

학년 \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4학년	16.1 (36)	83.9 (188)
5학년	16.1 (45)	83.9 (235)
6학년	12.5 (30)	81.5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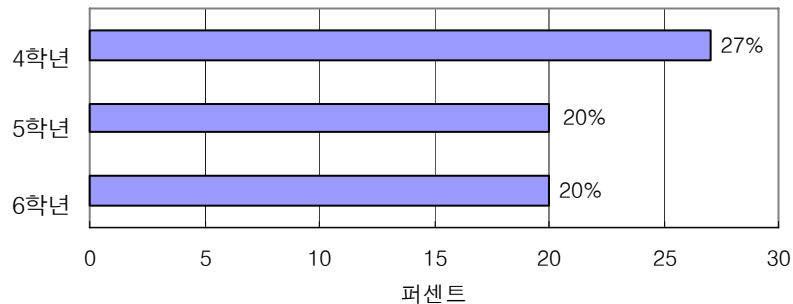
[그림 3-40] 학년별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비교

라) 평균 수업참여 시간 실태 비교 분석

평균 수업 참여 시간 실태의 학년별 비교는 <표 3-24>와 같이 나타났다. 4학년 총 응답자 221명 중 60명(27.1%), 5학년 총 응답자 277명 중 54명(19.5%)이 5교시 미만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학년의 경우 총 응답자 239명 중 47명(19.7%)이 5교시 미만의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수업참여율이 비교적 저조한 이유는 5학년과 6학년에 비해 일일 수업시수가 짧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3-24> 학년별 정규수업(6교시) 참여 실태 비교

학년	피해경험	예	아니오
		비율(빈도)	비율(빈도)
4학년		27.1 (60)	72.9 (161)
5학년		19.5 (54)	80.5 (223)
6학년		19.7 (47)	80.3 (192)



[그림 3-41] 학년별 평균 수업참여시간 실태 비교

마. 폭력피해 여부에 따른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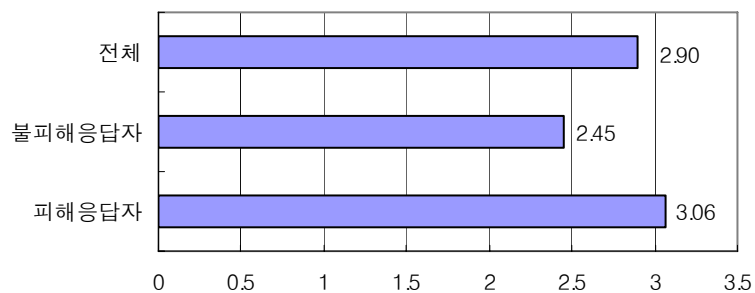
1) 신체적 폭력 피해 후 변화 비교 분석

1-1)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 집착 상승

“나는 맞으면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의 비교결과는 <표 3-25>와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3.06)일수록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운동선수(평균=2.45)보다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 집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평균=2.90) 보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변화에서 운동집착을 강하게 하는것에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신체적 폭력이 운동집착에 관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된다.

<표 3-25>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집착 상승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0	3.06	1.214
피해없는응답자	185	2.45	1.359
전체	735	2.90	1.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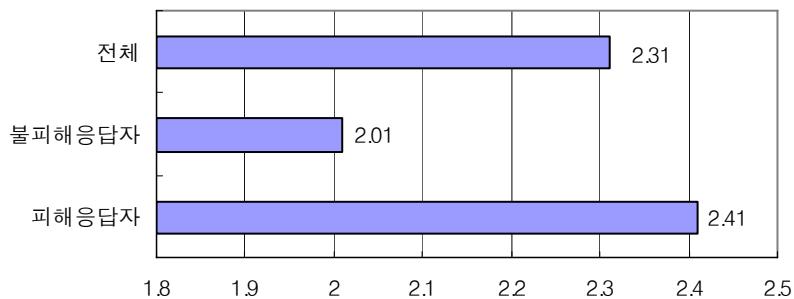
[그림 3-42]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집착 상승 차이

1-2)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시험 성적

“나는 맞으면 시험 성적이 오른다”의 비교결과는 <표 3-26>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41)일수록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운동선수(평균=2.01)보다 신체적 폭력 피해 후 시험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평균=2.31) 보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변화에서 시험 성적 향상은 비교적 작은 평균값으로 나타나 신체적 폭력이 시험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3-26>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시험 성적 향상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48	2.41	1.158
피해없는응답자	184	2.01	1.192
전체	732	2.31	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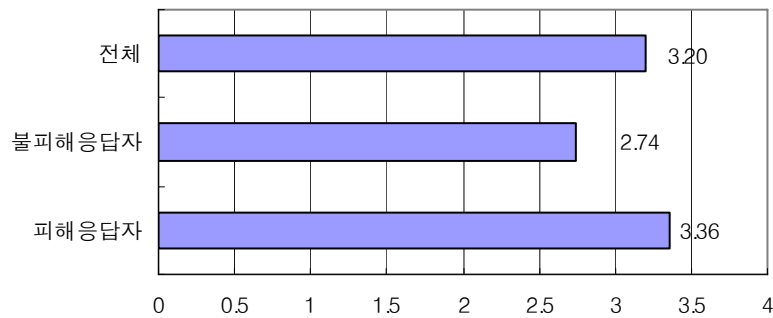
[그림 3-43]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시험 성적 향상 차이

1-3)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승리 집착 상승

“나는 맞으면 시합에서 꼭 이기고 싶어진다”의 비교결과는 <표 3-27>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3.36)보다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운동선수(평균=2.74)보다 신체적 폭력 피해 후 변화에서 승리에 대한 집착 상승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평균=3.20) 보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변화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신체적 폭력은 승리에 대한 집착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27>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승리에 대한 집착 상승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48	3.36	1.407
피해없는응답자	184	2.74	1.550
전체	732	3.20	1.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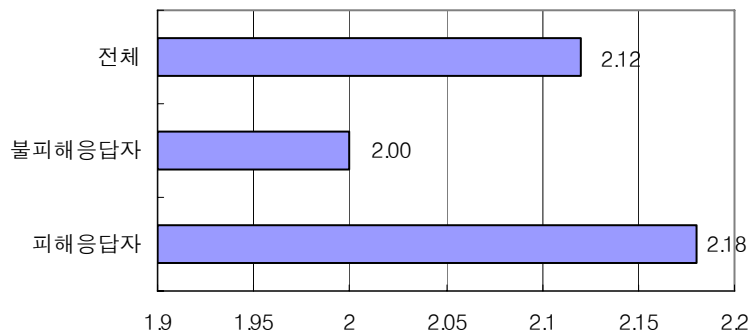
[그림 3-44]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승리 집착 상승 차이

1-4) 운동 포기 욕구

“나는 맞으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의 비교결과는 <표 3-28>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18)가 폭력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학생운동선수(평균=2.00)보다 다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평균=2.12)는 비교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평균값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 피해가 운동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8>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3	2.18	1.223
피해없는응답자	183	2.00	1.414
전체	736	2.12	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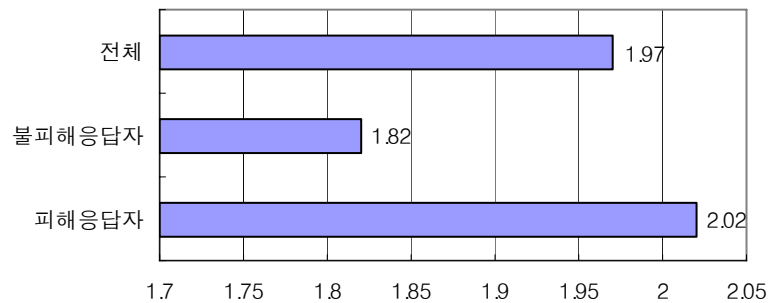
[그림 3-45]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1-5)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음

“나는 맞으면 학교에 가기 싫다”의 비교결과는 <표 3-29>와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01)는 폭력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학생운동선수(평균=1.82)보다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평균=1.97)는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등교에 대한 거부감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 등교 거부감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1	2.02	1.194
피해없는응답자	187	1.82	1.165
전체	738	1.97	1.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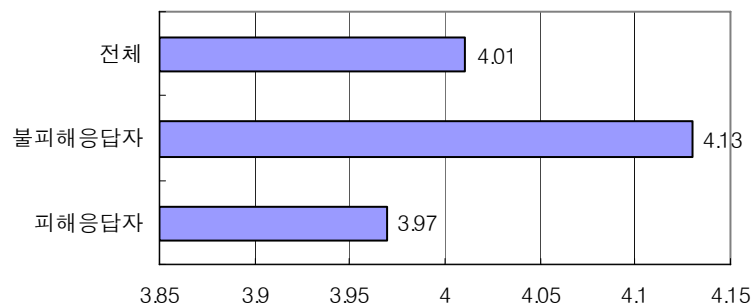
[그림 3-46]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등교 거부감 상승 차이

1-6) 감독, 코치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나는 코치·감독선생님이 좋다”의 비교결과는 <표 3-30>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3.97)보다 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운동선수(평균=4.13)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두 집단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평균=4.01)는 비교적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지도자에 대한 반감은 비교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0>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3	3.97	1.113
피해없는응답자	187	4.13	1.047
전체	740	4.01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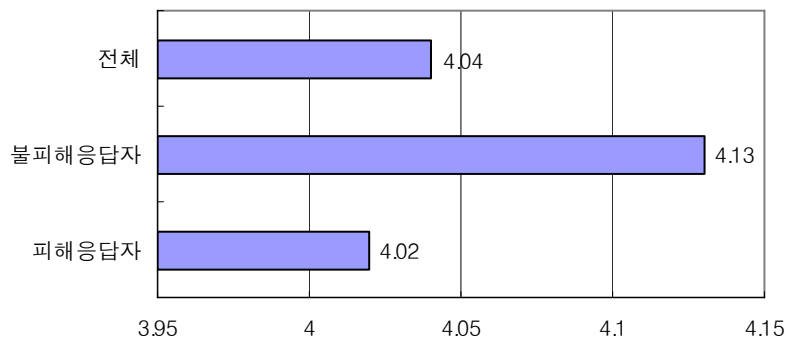
[그림 3-47]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1-7) 운동부생활에 관한 만족도

“나는 운동부 생활이 좋다”의 비교결과는 <표 3-31>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4.02)보다 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운동선수(평균=4.13)의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 피해로 인한 두 집단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평균=4.04)는 운동부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운동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3-31>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생활 만족도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1	4.02	1.116
피해없는응답자	187	4.13	1.114
전체	738	4.04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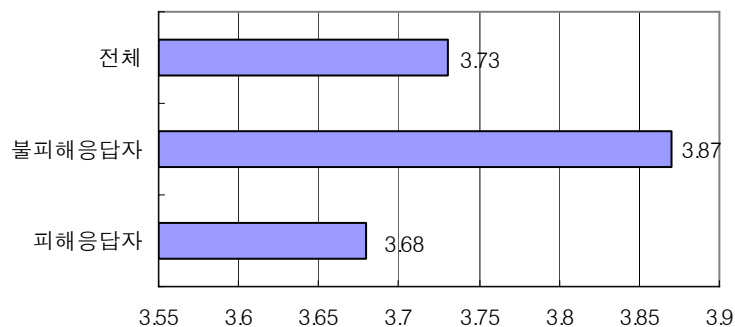
[그림 3-48]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생활 만족도 차이

1-8)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도

“나는 학교생활이 좋다”의 비교결과는 <표 3-32>와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3.68)보다 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운동선수(평균=3.87)의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 피해로 인한 두 집단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평균=3.73)는 학교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운동부생활에 대한 만족감(평균=4.04)보다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평균=3.73)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 즉 학교 수업, 교우관계, 담임선생님등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2>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5	3.68	1.143
피해없는응답자	187	3.87	1.220
전체	742	3.73	1.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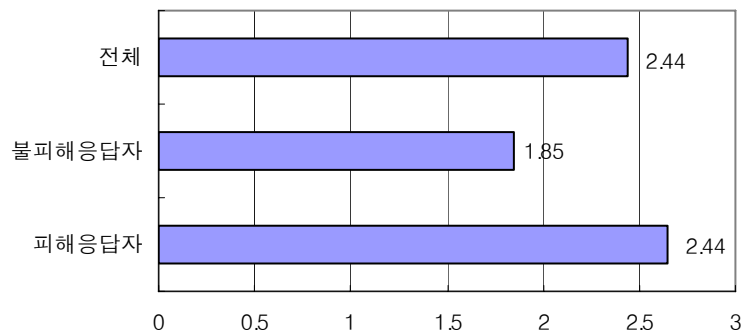
[그림 3-49] 신체적 폭력 여부에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1-9) 운동부 후배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나는 운동부 후배를 때린 적이 있다”의 비교결과는 <표 3-33>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65)일수록 운동부 후배를 가해한 경험이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운동선수(평균=1.85)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운동부 후배를 때려본 경험이 더 높다는 것으로 그 피해자는 폭력 가해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력이 대물려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도자들의 폭력이 어린 운동부원들의 폭력성을 높이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3-33>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후배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1	2.65	1.252
피해없는응답자	186	1.85	1.109
전체	737	2.44	1.264



[그림 3-50] 신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폭력 가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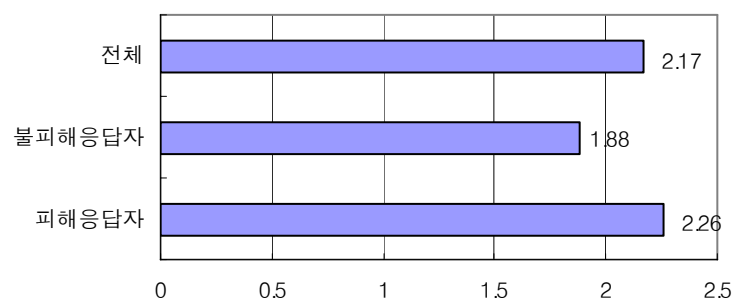
2) 언어적 폭력 피해 후 변화 비교 분석

2-1) 운동 포기 욕구

“나는 욕을 먹으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의 비교결과는 <표 3-34>와 같이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26)가 폭력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학생운동선수(평균=1.88)보다 다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정신적 피해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평균=2.17)는 비교적 폭력 피해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평균값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폭력 피해가 운동 포기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18)보다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26)가 다소 높은 것은 언어적 폭력 즉 정신적 피해가 신체적 폭력 즉 구타에 비해 어린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좀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표 3-34>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0	2.26	1.183
피해없는응답자	191	1.88	1.045
전체	741	2.17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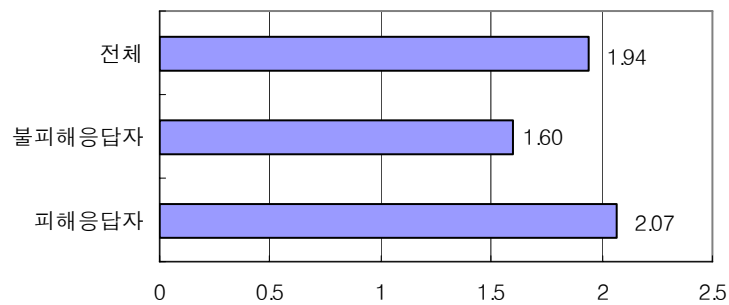
[그림 3-51]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 포기 욕구 차이

2-2) 언어적 폭력 피해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음

“나는 욕을 먹으면 학교에 가기 싫다”의 비교결과는 <표 3-35>와 같이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2.07)는 폭력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학생운동선수(평균=1.60)보다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면 학교 등교에 대한 거부감이 폭력 피해가 없는 운동부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평균=1.97)는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등교에 대한 거부감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 등교 거부감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1	2.07	1.198
피해없는응답자	186	1.60	.966
전체	737	1.94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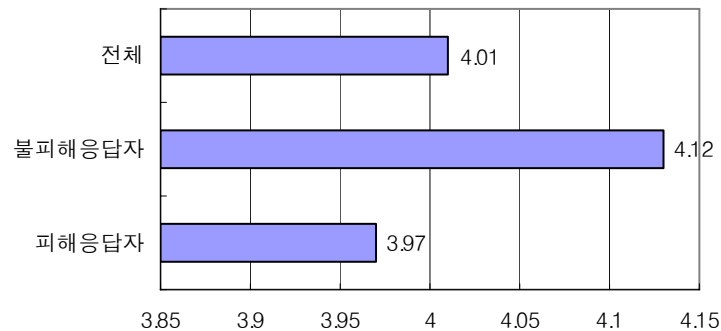
[그림 3-52]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등교 거부감 차이

2-3) 감독, 코치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나는 코치·감독선생님이 좋다”의 비교결과는 <표 3-36>과 같이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3.97)보다 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운동선수(평균=4.12)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두 집단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평균=4.01)는 비교적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지도자에 대한 반감은 비교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6>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0	3.97	1.085
피해없는응답자	190	4.12	1.130
전체	740	4.01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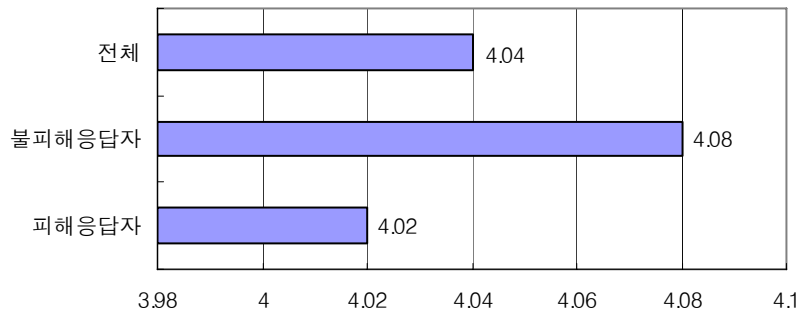
[그림 3-53]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지도자 만족도 차이

2-4) 운동부생활에 관한 만족도

“나는 운동부 생활이 좋다”의 비교결과는 <표 3-37>과 같이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4.03)보다 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운동선수(평균=4.08)의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두 집단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평균=4.04)는 운동부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언어적 폭력은 운동부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3-37>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생활 만족도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1	4.03	1.097
피해없는응답자	187	4.08	1.171
전체	738	4.04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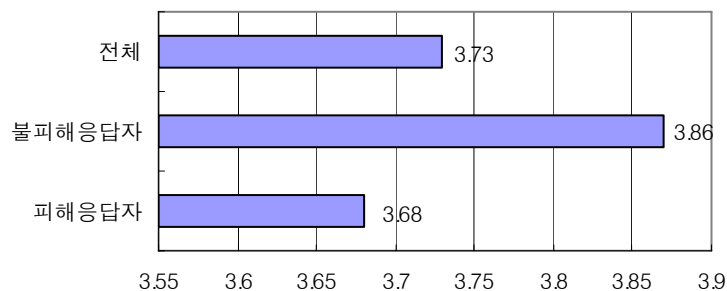
[그림 3-54]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운동부 생활 만족도 차이

2-5)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도

“나는 학교생활이 좋다”의 비교결과는 <표 3-38>과 같이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평균=3.68)보다 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운동선수(평균=3.86)의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 피해로 인한 두 집단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평균=3.73)는 학교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 언어적 폭력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운동부생활에 대한 만족감(평균=4.04)보다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평균=3.73)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부원들의 학교생활 즉 학교수업, 교우관계, 담임선생님등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8>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피해응답자	555	3.68	1.169
피해없는응답자	187	3.86	1.145
전체	742	3.73	1.161



[그림 3-55] 언어적 폭력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욕구

3)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후 변화 비교 분석

“나는 코치·감독선생님이 좋다”와 “나는 운동부 생활이 좋다” 그리고 “나는 학교생활이 좋다”의 비교결과는 <표 3-39>와 같이 나타났다. 성적 피해(성추행)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들과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운동선수들 간의 평균값 차이는 다소 있지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 피해응답자의 경우 지도자에 대한 만족(평균=3.38), 운동부 생활에 대한 만족(평균=3.25),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평균=3.38)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집단간 비교는 무리지만 이 평균값의 결과는 성적 폭력이 여학생들의 지도자, 학교생활, 운동부 생활 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표 3-39> 성적 폭력(성추행) 피해 후 지도자, 운동부생활, 학교생활에 관한 비교

	구 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총 피해응답자	지도자에 대한 만족	111	3.88	1.119
	운동부 생활에 대한 만족	111	3.92	1.126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111	3.76	1.141
총 피해없는 응답자	지도자에 대한 만족	635	4.03	1.084
	운동부 생활에 대한 만족	635	4.07	1.098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635	3.72	1.142
여학생 피해응답자	지도자에 대한 만족	8	3.38	.744
	운동부 생활에 대한 만족	8	3.25	.463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8	3.38	.744

2. 심층면접 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결과

가. 심층면접 조사

1) 개요

심층면접은 조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설문조사법 등의 다른 연구방법에 비하여 연구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1차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 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가)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운동부등의 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장학사, 단체종목, 개인종목, 대인종목 지도자, 학부형 각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B 교육청 초등교육과 체육청소년 담당 장학사, Y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C 초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국가대표 체조부 코치, W초등학교 축구부원 학부모형이며 면접은 11월 2일에 실시되었다.

나) 조사내용

▷ 정책입안자(초등교육과 체육청소년 담당 장학사)

- 현재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에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 법적 · 제도적 방안들이 잘 이행되어지고 있는가?
- 모범적인 혹은 비모범적인 운동부 운영 사례가 있다면?
-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들이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 및 코치선생님

-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의견은?
- 초등학교 전국대회 운영에 관한 의견은?
-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 대책은?
- 현장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은?

▷ 학 부 모

- 학부모로써 자녀의 폭력 피해 경험은?
- 학부모로써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2) 심층면접 결과

가) 현재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에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 초등학교에서는 단체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합숙훈련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합숙훈련에 대한 법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선수를 선발하고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선수를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합숙이나 훈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작년 축구부 아이들이 불 때문에 죽었기 합숙이 금지 되었다.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사고 후 검사 때문에 방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합숙을 금지하면서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오라는 요구를 하니깐 체벌이 불가피하다. 지방은 재정적 지원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한다. 지방에서 스카우트 해온 아이들을 위해 전세 집까지 마련해 준 사례도 있다. 월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비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팀 내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초라한 시설에 의해 유지를 하고 있는 현실로 어떻게 보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좋을 거 같다. 학교에서 알면서도 학교 안에서 하

지 않기만 하면 눈감아 준다는 것이다. 학교 밖에 하지 않으면 팀이 운영이 안 된다.

- 축구 같은 경우 원천적인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토너먼트 제도를 없애고 지역리그제로 바꾸었다. 수요일, 토요일은 4교시 수업 후 지역 리그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나) 법적 · 제도적 방안들이 잘 이행되어지고 있는가?

- 개인종목 같은 경우 잘 따르지 않고 있다. 골프는 현재 거의 수업 못 듣고 있다. 그들의 부모들이 원해서 원칙적으로 수업 일수 중 1/3이상 빠지게 되면 진급을 못하게 되어있는 현실이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법적으로 그들을 유급 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부모가 원하면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선수들은 해외 유학 및 전지훈련을 못 가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수업 결손은 학교에서 원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누구도 지금 고급 스포츠 즉 테니스나 골프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수업을 전폐하는 실정이다. 아예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아예 훈련을 하고 있고 특별한 재제 조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운동부원들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변화를 모색하고 노력중이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교육감배 축구 대회가 있었다. 지금은 리그제도로 바뀌었지만 교육감배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면 방법이 없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업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담임선생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지도자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하고 있었다.

다) 모범적인 혹은 비모범적인 운동부 운영 사례가 있다면?

- 비모범적 사례의 대표적인 예다. 개인종목 중 테니스는 A도를 이길 수

없다. A도는 선수를 11월쯤 선발해서 겨울 내내 합숙 훈련을 해서 5월에는 수업도 못 들어가게 하고 훈련만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선수들은 능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또한 유능한 코치들은 그 곳으로 가려고 한다.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운동하는데 있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은 거의 개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 운동부 운영을 선진국처럼 클럽화 시켜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유치부도 있다. 우리나라는 운동을 시키고 싶어도 학업 때문에 못시키는 실정이다. 일본은 오사카 한 지역에만 300여개의 클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총 팀 수가 고작 20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클럽화는 저변확대를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은 개인별로 대회에 참석한다. 텐트나 축구공이나 음식이나 모두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대회에 참여하는 문화가 잘 보급되고 있다.

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들이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 현장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인권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선수수급 해결, 클럽화 도입, 성적지상주의 타파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야한다.

마)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의견은?

- 20년 전과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다.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는 반복되어질 것이다.

- 폭력과 체벌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 수업결손에 관한 문제는 현장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행정적인 문제와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 학부모들의 눈높이 즉 내 아이들이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폭력에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실력을 끌어올리려는 욕심 때문에 발생한다.

바) 초등학교 전국대회 운영에 관한 의견은?

- 전국 소년체전을 반드시 없애야한다. 소년체전을 없애야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 지역 리그제 도입이 중요하다. 주말을 이용하거나 수업결손이 없는 수요일 리그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사) 현장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방안은?

-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인권등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 학부모 입장의 피해 사례와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은?

- 피해 사례는 거의 없다. 현장 지도자들이 체벌을 가할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받는 아이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들이 현장에서 운동을 직접 관찰한다. 그러기에 폭력 예방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클럽화를 도입해서 정규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다. 수업결손은 거의 없는 편이다.

나. 전문가 세미나

1) 개요

문헌조사와 1차 연구결과, 심층면접을 가지고 도출한 2차 개선방안을 보완·수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세미나는 H대학의 학생운동선수 출신 K교수, H대학의 스포츠 사회학 전공 J교수, S대학 체육학 관련 P, K교수 2인, D대학 경찰행정학 관련 L교수가 참석하였다. 조사내용은 도출된 2차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을 주로 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의 폭력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2) 전문가 세미나 결과

가) 초등학교 학생 운동선수 폭력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본 연구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 개선방안의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인본적인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내고 특기자 전형 제도까지 다루게 되면 거시적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나온 대안은 미시적이지만 직접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방안들이 되었다. 거시적인 것을 너무 폭넓고 많이 나열하다보면 또 다른 연구가 되니 중요한 몇 가지만 제안하고 미시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한다.

- 학교입장에서 학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폭력을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 정책입안자들이 문제이다. 정책입안자들의 승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메달의 유무이다.

- 학교에서 자문위원회를 유지하고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폭력으로부터 고생한 아이들을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인권보호를 위한 선수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소년원 인권 모니터링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불시적인 인권보호 감시는 별 효과가 없고 사실적 관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명이 들어 물어보면 넘어질 곳이 없는데도 넘어졌다고 이야기 한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거두기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보호에 관한 미시적인 정책 제안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개선방안의 실천은 대한체육회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집단 즉 국가 인권위원회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최소한 학교수업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과외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법적 ·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중에 지도자 연수를 년 2회 이상으로 하여 초기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1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다.

IV. 외국의 학생운동선수 인권개선 방안 및 제언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 운동 선수의 인권과 폭력에 관련된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 일본, 독일, 미국 등의 몇몇 나라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여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책들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 운동 선수의 인권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운동선수협회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지키고 있다. 또한 체육 지도자들이 모든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에 따라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과 선수들의 인권만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어 이를 법적인 제도장치 아래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운동부의 개념보다는 학생 선수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과 후 스포츠클럽화의 개념으로 초등학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1.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규칙(영국 사례)

영국 선수 협회(Scottish Athletics Federation)는 모든 어린 선수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 할 수 있도록 폭력에 대한 정의와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http://www.brianmac.demon.co.uk>).

가. 아동폭력의 정의

1) 육체적 폭력(Physical Abuse) - 부모나 어른에 의해 아이들에게 고의로 부상을 입히거나 부상임을 알면서도 예방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며 부상에는 때리기, 흔들기, 쥐어짜기, 화상, 물기, 과도의 강압, 술, 마약이나 독극물, 질식이나 익사 시키려 하는 것 등이 포함한다. 또한 과도한 연습과 운동으로 인하여 성장기 발육에 장애를 미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감정적 폭력(Emotional Abuse) - 아이들 보호를 등한시하거나 위협, 비꼬는 말투 사용, 비아냥거리거나 소리 지름, 자신감, 자존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위의 사항들은 어른들의 지속적인 무시 혹은 아이들의 노력이나 발달에 무관심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높은 기대로 인해 비현실적인 압력을 가할 때 나타난다.

3) 무시(Neglect) - 아이들에게 충분한 옷, 음식, 따뜻함, 의료치료 등이 필요할 때, 챙겨주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아이들을 홀로 방치하였을 때, 사고나 위협의 위협에도 아이들을 방치했을 경우를 말한다.

4) 성적 폭력(Sexual Abuse) - 어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을 만날 때를 의미하며 아이들에게 성적 활동 즉 성교, 수음,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노출 등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학생운동선수를 위한 인권보호 규칙

- 1) 아이들의 복지가 최우선이다.
- 2)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 능력, 성별, 언어,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폭력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 3) 모든 폭력에 관한 의심이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은 신중하고 엄격히 대응 한다.
- 4) 클럽이나 다른 조직들은 방침들을 준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5) 함께 참여하는 어른들은 보호와 함께 최상의 연습 환경을 제공하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 클럽에서 준수해야할 규칙

- 1) 아동 보호 담당관과의 약속
- 2) 모든 관리원들과 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어린이 학대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3) 바람직하지 못한 연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4) 영국 운동선수 협회나 그 지역과 관련된 SAF(Scottish Athletics Federation)의 권장 사항을 이행한다.
- 5) 피해 아동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라. 클럽에 소속된 아동 보호 관리인(Child Protection Officer)의 규칙

- 1) 모든 클럽 자원봉사자, 관리자, 지도자들은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2) SAF(Scottish Athletics Federation)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문서를 송부해 주어야 한다.
- 3) 다른 클럽 멤버들에게 보고서 형식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아야 한다.

마. SAF(Scottish Athletics Federation)가 따라야 하는 규정

- 1) 필요할 시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아동 보호 담당관이나 클럽에 대한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 3) 위법 행위에 관한 결정
- 4) 아동 보호 담당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5) 부적격자에 대한 전체 명단 보유
- 6) 정책 관리

바. 영국 운동선수 위원회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

- 1) 아동 보호 담당관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 2) 모든 부적격 담당관들의 명단 보유
- 3) 모든 정책 관리

사. 지도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

- 1) 건강과 안전: 지도자들은 운동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응급처치 시설과 응급실로 향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코치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연습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2) 폭력 예방: 지도자들은 어린 선수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지도자는 모든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유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아. 폭력예방을 위한 대응방법

영국 선수 협회(Scottish Athletics Federation)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에서는 어린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폭력이 발생하는 몇 가지 측면을 분석하여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 단계별 대응 방법

□ 1단계-불평과 의혹을 유발하는 사건들에 대한 대응 방법

- 1) 어느 한 아이가 당신에게 말할 수도 있다.
- 2) 누군가가 한 사건을 보고하거나 또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 3)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 4) 만약 어느 한 가지 의혹이 당신의 관심을 집중시킬 경우

● 지켜야할 것들

- 1) 차분함을 유지하라: 부적절한 행동을 급하게 취해서는 안 된다.
- 2) 아이를 안심시켜라: 아이들을 비난하지 말고 아이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 경청하고 신뢰하라: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4)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인 한명을 참석시켜라: 진술을 불일치는 법적인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 5) 질문을 최소화하라: 상당수의 경우 고개를 끄떡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인식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질문의 해야만 한다면 예/아니오 방식의 응답보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행 법령은 매우 엄격하므로 만약 타인에 의해 말이나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주입된 것처럼 보인다면 아동학대 소송은 각하될 수도 있다.

- 6) 아이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음을 확인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적절한 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7) 신분이 확인된 아동보호인력과 상담하라: 당신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다.
- 8) 신뢰감을 유지하라.

● 피해야할 것들

- 1)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라
- 2)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라: 당신은 가능한 최대의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아이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말라
- 4) 지연시키지 말라
- 5) 추가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아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
- 6)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만약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NSPCC로 전화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2단계 - 기록

아이가 말한 사실 또는 당신의 관심을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 포함시켜야할 세부사항

- 1) 아이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 2) 발생한 사건의 일자, 시간 그리고 의혹의 내용.
- 3) 아이의 행동과 감정상태, 타박상 또는 다른 상해를 설명하는 당신의 관찰내용.
- 4) 사건에 대한 아이의 진술(만약 아이가 이야기 한다면).
- 5) 관찰결과 당신이 아이에게 취한 행동과 아이에게 전달한 이야기, 보호자와의 접촉 여부

- 6)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신의 관심을 표현했는지에 대한 여부 혹은 타인에게 이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
- 7) 보고서에 대한 서명과 날짜 기재
- 8) 보고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 9) 해당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폭로자가 누구이고 관계 사법당국(경찰)이 폭로된 사실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라는 표시해야 하며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 3단계 - 적법한 인물의 참여

1)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클럽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보호 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로써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보호 담당관은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명시함과 동시에 해당 보고서를 SAF 임원에게 전달하고, 임원으로 하여금 징계 위원회(Disciplinary Panel)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아동보호 담당관의 사건 혹은 의혹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아동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즉시 해당 기관의 책임자(학교장, 스포츠센터 관리자, 팀 관리자)와 접촉 하여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즉시 Social Services 및 사법당국과 접촉해야 하며 동일한 성명의 기록, 공무원의 지정이 필요하며 추후 연락이 필요할 경우 통화시각, 일자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 접촉은 또한 SAF의 임원과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코 지연시켜서는 곤란하다: 만약 당신이 앞서 제시한 사람들과 즉시 접촉할 수 없는 경우, 당신은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관계당국과 접촉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 NSPCC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또는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하부 부서와 접촉할 수 있다.

나. 지정된 아동보호 담당관을 위한 지침

1) 잘못된 행위나 의혹에 관한 보고서가 당신의 관심사항이라면 의사결정은 제기된 의혹의 남용 여부 또는 조사의 불성실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만약 의혹이 남용된 경우, 다음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3)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 4) 해당 기관의 책임자 혹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보고와 이에 관해 기록할 것
- 5) SAF의 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부분적인 추이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 임원은 징계위원회(Disciplinary Panel)를 선정하기 전 기간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
- 6) 신뢰감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제기된 의혹이 불성실한 조사에 기인한 경우

- 1) 제기된 의혹을 기록할 것
-SAF의 임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선정 될 수 있고 면밀한 조사가 실행될 수 있다.
- 2) 긍정적인 실천 방안의 수립 및 촉진
-클럽과 스포츠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실천 방안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아동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 클럽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침을 확립해야 하며 클럽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숙지해야만 한다.
- 3) 아동보호 담당관의 임명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며 클럽 전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실천 방안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클럽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역할은 사례 제시, 간단한 훈련 발표, 전단지과 포스터의 활용, 클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통한 공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4) 위에서 제시한 절차들 이외에도 아동보호 담당관들은 클럽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적절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자원봉사자 들은 사법 경찰의 심사 시 흔쾌히 응해야 한다. 작성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SAF로 송부되어야 한다. 클럽들은 아이들의 집 전화번호가 표시된 아동 보호 지침서도 비치해 놓아야 한다. 아동

보호 담당관이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제공되어야 한다.

5) 사진과 비디오의 사용

-현재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스포츠 사진과 영상의 오용이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센터들은 모든 사람들이 간단한 서류에 자신들의 성명, 주소, 자신들의 관심 분야를 간단한 서류에 기입하게 한 다음 사진기와 영상촬영기를 지참하게 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 혹은 지도 목적으로 선의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료의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클럽들, 이벤트 담당자 및 스포츠 센터들은 이러한 실천 방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라. 복직에 관한 법규

1)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혹은 퇴출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지속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자는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복직되는 경우는 없다.

2) 위원회(Panel)는 복직 요청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사전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 한다.

3) 비록 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직 요청에 대한 채택 혹은 기각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추가적인 서면이나 구두 진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구두 진술의 경우 복직 신청자는 누군가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의사표현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4) 아동학대로 인한 전과자의 경우 아이들과 관련된 직종에서는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5)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그 사실들은 은폐했을 경우 자격정지나 그에 따른 처분을 감수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책임

1) SAF는 복직 신청자 자신의 변호를 위해 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수수료, 비용, 기타 다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청자들에 대한 유해한 행동이나 고통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책임지지 않는다.

바. 시행 방침에 대한 감독

<시행 방침에 대한 총 책임자의 감독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사건 추이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2) 시행 방침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와 관련 일반적인 진술을 클럽 측에 요청할 것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이 사전에 예방되는지 확인하고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항상 그 현장을 공개해야 하며 당신과 각각의 아이들이 관찰 반경 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
- 2) 만약 아이에게 신체적 접촉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면 지도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해당되는 아이에게 우선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계속 움직이고 능숙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곤란할 경우 세심함이 요구된다. 몇몇 학부형들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대단히 민감하므로 학부형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3) 학부형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곳이 바로 탈의실이다. 만약 탈의실을 감독하고자 한다면 감독관을 항상 2인 1조로 구성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 4) 원정경기를 떠날 경우 아이들은 적어도 1명의 성인 남성과 1명의 성인 여성을 동반하여야 한다.
- 5) 자원봉사자들과 전문지도자는 아이들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 6) 자원봉사자들과 전문지도자는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안전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UKA와 SAF에서 제시한 모든 실행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 7) 지도자들은 선수지도 리더십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어른들은 자신들이 지도하거나 옹호하고 있는 활동들이 아이들의 연령, 성숙도, 개인능력에 비추어 타당한가를 확인해야하며 단체 경기 참가 가능 연령에 대한 UK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9) 어른들은 아이들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계발시킬 필요가 있으며 규칙 위반과 금지된 도구의 사용 같은 일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10) 어른들은 아이들의 개별 행동과 외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1) 어른들은 아이들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혹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아이들의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사실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1)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어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2) 단거리 자동차 여행 시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가는 것
3)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경우 아이들을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
4) 만약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면 클럽의 책임자, 책임 기관, 부모나 보호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동의를 득한 후에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당신은 정열적인 키스나 포옹은 지양하여야 한다.

5) 만약 당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연히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또는 당신의 행위가 성적인 연상을 유발하거나 당신이 한 행동이 오해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보고하라. 부모나 보호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2. 폭력예방을 위한 제안서(미국, 캐나다 사례)

1) 미국 사례

미국의 U.S. Department of Education & Child Development Institute에
서의 폭력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http://www.childdevelopmentinfo.com>).

체육지도자들은 아이들에게 운동을 함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1) 코치들은 이기는 것만을 강조하지 말아라. 즐거움과 개인적인 기술의 발달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코치들은 향상된 부분에 대해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운동은 승패에 따라 개인이 판단되고 질책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수들은 부상일 때나 아플 시에는 경기에 출전해선 안 된다.

2) Hellstedt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하는 시간보다 벤치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9-14세의 어린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인지한다. 어린 남자선수들을 조사해 본 결과 90%가 넘는 선수들이 이기는 팀에서 벤치를 지키는 것보다 지는 팀에서 경기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3) 스포츠 폭력은 전문 스포츠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코치들은 전문팀들이 속해있는 상징적인 협회들은 피해야 한다. 그들은 전문 팀들의 코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Weiser와 Love는 학교 코치들에게 자신이 팀의 운영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전문 스포츠 안에서 코치와 선수들 간의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재정비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용기를 격려하고 중요 결정 사항에 참여시키며 선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팀의 운영자라는 생각이 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좋은 경기결과를 만들어낸다.

4) 가치 추구적인 중간지도 전략과 커리큘럼을 통합해야 한다. Waldzilak는 Kohlberg의 도덕성 함양 모델과 지도 이론들을 이용하여 수많은 중간지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전략들은 행위, 도덕성, 스포츠 정신의 인지력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과 지도

자들은 그들 자신이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스포츠 가치를 지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도 수정해야만 한다.

5) 가장 초기와 잠재적으로 아이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태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체육 지도자들이나 코치들은 부모들에게 교과과정 활동과 목표, 공격적이거나 불안한 행동 증상에 대한 경고, 경기에 대해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게 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캐나다의 사례

캐나다의 Canadian Centres for Teaching Peace에서는 유소년 스포츠에서의 폭력 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http://www.peace.ca>).

캐나다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주원인은 바로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은 유소년들에게 폭력적인 선수들을 하나의 역할 모델로 소개하고 있으며 종종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또한, 유소년 체육의 상업화는 유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경기 스포츠를 너무 일찍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수로 그리고 때로는 관람자로서 아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교훈을 얻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학교 체육에 있어서 폭력, 승리를 쟁취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함을 누리하고자 하는 과도한 의지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1) 주간 보호소와 보육원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정규 교육 체계도 동일하다). 유소년 체육 조직이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제 다수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조직에도 또한 허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 모든 지도자들(그리고 부모들)은 유소년의 성장과 생리 그리고 스포츠

철학, 그리고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모든 지도자들의 이력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만 한다(이는 Block Parents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모든 선수들, 부모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각각의 역할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규칙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4) 다른 선수들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을 경기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과 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들은 필히 금지되어야 한다. 유소년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특정 방식의 행동(예컨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도 높은 별점을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는 제거되어야 한다. 경기와 실제 생활에 모두에 있어서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5) 말썽이 잦은 선수들은 단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적절한 기간 동안 참가 유보). 예컨대, ‘삼진 아웃제“ 도입이다.

6) 지도자나 선수에 대한 폭력이나 욕설, 여성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비방은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7) 경기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권장되어야 한다. 즉, 모든 경기는 악수로 시작하여 악수로 끝을 맺어야 한다.

8) 리그 경기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부상 비율 정보는 선수들과 부모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9) 전문 스포츠 조직은 폭력을 반드시 감소시켜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사회가 동물들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닭싸움이나 개싸움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전문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폭력은 규제되어야 한다. 클럽 소유자들은 피고용자들이나 선수들이 수백만 달러

를 지불한다고 해도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폭력 예방을 위한 운동부 운영 시스템

1)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는 교육활동 중 하나로 운동부 활동이라는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운동부 활동은 학생들의 자유 의지로 취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클럽 활동과는 달리 교육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방과 후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이며 이렇게 모인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각 경기 연맹에 등록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이렇게 학생들이 간단히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이다.

현재 학교 체육의 정상적인 운동과 운동 특기를 가진 학생의 자율적인 운동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운동부를 클럽화 시켜서 선수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초등부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거의 100% 클럽화 된 상황이며 전국 대회는 방학에 개최되는 1개 대회가 전부다.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연습을 하며, 주말에 지역리그 경기를 열며 체육회 주최 전국 대회에는 저학년 선수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대회 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체육특기자제도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선수에게 학습권도 보장해주고 있다.

2) 독일의 사례

독일의 학교체육은 오랜 역사(1811년 sch-ulturnen(학교체조)으로 시작-Leibestibung-Leibeserziehung)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독일의 학교체육은 학교에서의 '정규 체육활동(unterricht licher schuesport)'과 수업 외에 참가할 수 있는 '과외활동(auberunterricht licher schuesport)'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Grundschule(초등학교), Sonderschule (특수학교), Realschule(도제학교), Hauptschule(직업학교), Gymnasium(짐나지움)의 학

교조직에 따라 수업목표와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독일의 모든 학교체육 시설은 교육부나 학교장이 아닌 정부 체육국이 관할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각 지역 스포츠클럽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 내 초등학교의 80% 이상, 중·고등학교는 100%에 가까운 학교들이 크고 작은 체육관을 하나 이상씩 갖추고 있다. 스포츠클럽들의 '체육과외'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체육관들이 오전엔 학교체육수업에, 방과 후엔 스포츠클럽들의 '과외활동'에 이용된다.

한 초등학교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의 헤어조그 초등학교에서는 바이에른주에 "sport nach"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개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진행을 한다. 헤어조그 초등학교는 레슬링, 하키, 탁구를 스포츠클럽과 연계하고 있다. 각 종목의 연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슬링은 월요일 오후에 경기 클럽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스포츠클럽의 실기지도자가 운영하고 있다. 하키는 바이로이스 체조협회와 함께 연계하여 협회의 실기지도자와 학교의 하키 전공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누어 지도한다, 탁구는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수준별로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도자를 고용하고 실기지도자 자격을 갖춘 대학생이 함께 지도한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스포츠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스포츠클럽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클럽과의 연계 과정은 우선 스포츠클럽과 관계를 맺고 회의 후에 연계 프로그램을 계약한다. 그런 다음, 지역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고 스포츠클럽의 재정 수준을 고려하여 스포츠 용품과 시설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연계프로그램계약을 1년으로 하며 1년 후에도 학교와 클럽에서 다른 의견이 없거나 해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고 해약을 계약 당시와 같이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 확정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참여자를 모집한 후 진행한다.

V. 학생운동선수 인권개선 방안 및 제언

개화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 엘리트 체육이 도입된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발전과 성과에 따른 커다란 부작용은 한국스포츠계의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반복적인 형태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린 초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도 뿌리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어린 운동부 선수에게 학부모나 현장 지도자들의 가혹행위는 보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을 행하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신체적, 언어적 폭력 피해가 총 응답자의 70%가 넘는 비율이 응답하였다. 또한 성적 폭력 피해도 15%에 가까운 응답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부모의 지나친 기대심리와 성적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지도자들의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오는 성적폭력행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전국대회가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이로 인한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은 무시되어 지고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학습권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심각한 엘리트 스포츠 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어린학생들에게 조차 합숙을 강요하며 성적을 내기 위한 어른들의 사고가 8명의 어린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결과이다. 그 이후 초등학교 운동부의 합숙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총 응답자의 47%가 합숙훈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모든 책임을 현장 지도자의 탓으로 돌리기엔 그 책임적 소재가 너무 불분명한 것을 사실이다. 선수 폭력 행위는 체육계 전반의 책임임은 분명하다. 체육 정책적 문제점과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 그리고 인권에 대한 소홀함 등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이번 연구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 초등학교 운

동선수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적 환경과 운동부 문화등을 만들어 주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운동 선수등의 폭력행위 근절 대책을 현장 지도자들의 의식변화에만 바라는 것보단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체육계 전반의 거시적 개혁방안에 기초하여 체육 정책적 차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충원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근절대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체육 정책적 측면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일 수업시수 결손 문제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학습권 보장 문제 그리고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법적·제도적 측면은 본 연구에서 나타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므로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충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측면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현장에서 폭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피해를 부모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시 폭력피해에 대한 무관심이 현장지도자들의 심층면접결과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의식 변화 유도 측면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비추어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주체가 대부분 지도자들로 나타났기에 현장에서의 의식변화 요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체육 정책적 측면

어린 학생들의 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정책적인 보완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 학교별 전국규모 대회 참가(소년체전) 년 2회로 제한
- ▷ 방학을 이용한 전국규모 대회 개최
- ▷ 년 중 전국규모 대회 횟수를 단계별로 축소
- ▷ 주말을 이용한 권역별 리그제 활성화

▷ 학교별 전국규모 대회 참가(소년체전포함) 년 2회까지 제한

학교별 전국규모대회를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해서 년 2회까지 제한해야 한다.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제외한 전국대회 출전을 년 3회까지 제한하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각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소년체전 포함한 많은 전국대회들 때문에 어린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며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현장 지도자들의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대회출전 제한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고 매년 출전횟수를 관리하여 횟수를 초과하는 학교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 방학을 이용한 전국규모 대회 개최

아래 <표 1>과 <표 2>는 야구와 테니스의 2006년 초등학교 전국대회 일정표이다. 방학을 이용한 전국대회는 야구의 경우 6개중 1개에 그치고 있으며 테니스의 경우도 4개중 1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대회참가에

의한 수업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대회전 과도한 연습량과 합숙훈련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대회개최를 방학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때 학습권 보장 문제 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 년 중 전국규모 대회 횟수를 단계별로 축소

본 연구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총 응답자 중 단지 18%만이 폭력 피해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폭력행위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어린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나친 기대심리로 인해 지도자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되어지고 있다. 한 예로 축구와 야구는 TV를 통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혹은 미국 메이저리그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유명선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지나치게 높아져 폭력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심리는 전국대회 참가를 부추기며 승리지상주의에 목말라하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기에 학습권과 폭력행위 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부모와 지도자들 사이에 정당화 되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국의 엘리트 체육과 달리 100% 클럽화를 이루었으며 전국대회는 방학을 이용한 1개 대회가 전부이다. 또한 저학년들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승리에 대한 부담과 학습권 보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대회 횟수를 축소시키므로 지역리그제의 활성화와 선진국의 클럽식 운영제도가 도입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주말을 이용한 권역별 리그제 활성화

전국대회 횟수 축소와 방학을 이용한 전국대회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권역별 리그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서울시는 2006년도부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지역 리그제로 전환하고 클럽식 운영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므로 폭력행위 예방과 학습권 보장 등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적인 인프라 구축의 미흡함으로 아직은 활성화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단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시스템이 조화를 이

를 때 선진국형의 클럽화와 지역리그제가 활성화 되어 보다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기대된다.

<표 4-1>. 2006년 초등학교 전국규모 야구대회일정

대 회	기 간	일수
제3회 회장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4.15 ~ 4.20	6
전국소년체육대회	6.17 ~ 6.20	4
*제36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8.10 ~ 8.17	8
KBO총재배 전국초등학교야구선수권대회	9. 1 ~ 9. 8	8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11.1 ~ 11.6	6

*방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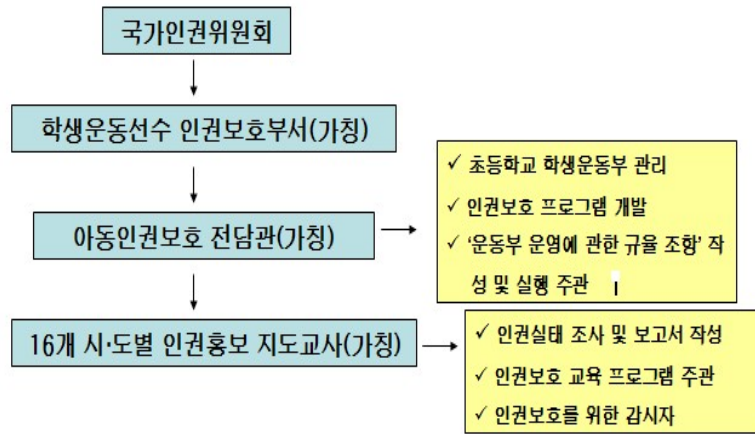
<표 4-2>. 2006년 초등학교 전국규모 테니스대회일정

대 회	기 간	일수
제 10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기대회	4.25 ~ 4.29	5
전국소년체육대회	6.17 ~ 6.20	4
*2006년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7.25 ~ 7.30	6
제12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배대회	10.24~10.28	5

*방학기간

2. 법적 · 제도적 측면

- ▷ 국가 인권위원회 산하 ‘초등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부서(가칭)’ 설치
- ▷ ‘아동인권보호 전담관(가칭)’ 배치
- ▷ 법적 효력을 갖춘 ‘운동부 운영에 관한 규율 조항(가칭)’ 동의서 작성



[그림 4-1] 초등학교 운동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조직 모형

▷ '초등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부서(가칭)' 설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의 피해는 응답자는 75%에 이르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인권보호 실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적폭력(성추행) 피해도 15%에 이르러서 지도자들과 운동부 선후배 사이에 인권에 대한 의식과 정보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와 지도자 그리고 각 지역의 체육담당 정책입안자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임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과연 이 어린학생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의 의문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감시와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인권위원회 혹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운동선수 인권보호 부서(가칭)'를 배치하여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특히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운영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교육인적자원부
- 운영방안: 초등학교 운동선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총괄책임 부

서, 아동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 인권홍보 지도교사(가칭) 파견, 아동인권 선언문 발표

▷ ‘아동인권보호 전담관(가칭)’ 배치

‘초등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부서(가칭)’에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전담관을 배치하여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에 관한 실질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 운영주체: ‘초등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부서(가칭)’에 전담관 배치
- 운영방안: 각 지역별 혹은 종목별 초등학교 운동부 현황 관리, 지도자와 학부모를 위한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 인권보호 선언문 작성, ‘운동부 운영에 관한 규율 조항(가칭)’ 개발 및 발송, 비인권적 지도자 및 학교 선정 및 발표

▷ 법적 효력을 갖춘 ‘운동부 운영에 관한 규율 조항(가칭)’ 동의서 작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예방에 있다고 판단된다. 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미시적 방안으로 운동부 운영에 관한 규율조항을 작성하여 학교장과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간의 동의서를 작성한다. 이는 인권보호에 관한 법적인 내용을 미리 숙지시키고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여 폭력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으로 사용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숙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학기가 시작 되기 전 학교장, 지도자, 학부모의 법적 책임 등을 숙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총 응답자의 40%가 넘는 학생운동선수가 금지되어 있는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 책임 등의 조치가 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합숙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보고되고 있다. 김미란(2004)의 “초등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의 연구에 의하면 합숙금지에 관한 지도자들의 응답은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가

25.5%, “합숙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34.4%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59.8%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합숙금지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선행시키며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의서 작성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 질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어린 학생들에게도 인지시키고 합당한 인권보호 권리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 운영주체: ‘아동인권보호 전담관(가칭)’ 개발 및 발송
- 운영방안: 매년 1회 학교장 책임 하에 의무적으로 실시, 동의서 작성 후 ‘학생운동선수 인권보호 부서(가칭)’로 발송, 동의서 작성 시 학부모 신상 기재 의무화, 지역별 임의로 학부모 선 정후 인권실태 조사 실시

3. 충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측면

- ▷ 각 시·도별 ‘인권홍보 지도교사’ 선발
- ▷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화
- ▷ 초등학교 운동부원들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가칭)’ 실시

▷ 각 시·도별 ‘인권홍보 지도교사(가칭)’ 선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인권홍보 지도교사(가칭)’를 선발하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인권홍보 지도교사는 ‘아동인권보호 전담관(가칭)’과의 행정적 연계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선발된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한다.

- 운영주체: 교육인적자원부의 선발 및 국가 인권위원회의 교육
- 운영방안: 지역별 인권보호 감시자, 지역별 인권보호 프로그램 실행 주관자, 지역별 인권보호 실태 보고서 작성

▷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폭력행위의 주체를 총 응답자의 75%이상이 '지도자'로 응답하였다. 또한 맞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69%가 '연습을 게을리 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장 지도자들이 어린학생들에게 승리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 수준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기대심리에 충족되지 못하면 그 결과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장 지도자들의 보수교육을 통한 폭력행위 근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운영주체: '인권홍보 지도교사(가칭)'
- 운영방안: 방학을 이용 년 2회 실시 의무화

▷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가칭)' 실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어린 학생들은 자신이 왜 폭력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폭력행위가 옳은 것인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후배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비율이 폭력 피해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 82%는 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부모님께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폭력이 아이들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아이들이 폭력에 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키워주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운영주체: 국가 인권위원회 개발 영상 프로그램 보급 및 각 학교별 교육 실시
- 운영주체: 년 2회 영상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 '스스로 표현하기 운동(가칭)' 전개

4. 의식 변화 유도 측면

- ▷ 학교장 명의의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및 피드백(Feedback)
- ▷ 초등학교 운동선수 학부모, 운동부 지도교사, 학교장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 개최
- ▷ 폭력 피해 부작용에 관한 홍보 강화
- ▷ 인권 예방과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 학교장 명의의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및 피드백(Feedback)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장 지도자와 학부모들의 지나친 기대심리, 일부 정책입안자들의 개인적 이익 그리고 여러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한 어린 아이들의 인권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비인권적 폭력행위는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간 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폭력행위 주체들의 의식적 변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폭력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학교책임자와 학부모간의 역할수행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방치되어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학교장과 학부모간의 의식변화와 학교장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학교장과 학부모 사이에 정기적 안내문은 대화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피드백을 통하여 학교장은 인권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 인권에 관한 의식변화를 가져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운영주체: 각 학교 학교장 및 학생선수 학부모회
- 운영방안: 학기별 1회 안내문 및 인권실태 조사서 발송

▷ 학생운동선수 학부모, 운동부 지도교사, 학교장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 개최

학교장 명의의 안내문과 인권실태 조사서에 관한 피드백을 주제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 운영주체: 각 학교 학교장 및 학생선수 학부모회
- 운영방안: 년 1회 정기 간담회 개최 및 인권실태 파악

▷ 폭력 피해 부작용에 관한 홍보 강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은 어린 학생운동선수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안겨준다고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폭력 후 심리변화에서 “화가 났다” 156명(23.0%), “운동이 싫어졌다” 98명(14.4%) 그리고 54명(8.0%)은 “복수심이 생겼다”라고 응답했으며 기타응답의 결과 “죽고 싶었다”등의 극단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낸 학생들도 몇몇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폭력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운동부원일수록 운동부 후배를 가해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보아 폭력 피해 부작용은 그 당시의 심리적 상태 변화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폭력 피해 부작용에 관한 홍보 강화가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운영주체: 인권홍보 지도교사(가칭)
- 운영방안: 운동부 지도자들의 의무적 “보수교육”에 포함

▷ 인권 예방과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인권홍보를 위한 ‘인권보호 지도자상’ 과 ‘인권보호 학교상’등을 발표 및 수상

- 운영주체: 각 시·도 교육위원회
- 운영방안: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인권보호 지도자상’ 과 ‘인권보호 학교상’을 선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

5. 제언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군사독재 시절 때부터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뿌리 내릴 때까지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유독 변화를 두려워하는 곳이 엘리트 스포츠 세계임이 틀림없다.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의 뿌리는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부터 국가대표 지도자까지 수십 년간 뚜렷한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시·도 정책입안자들과 단위학교의 묵인 하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합숙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과도한 전국 규모 대회참가로 인한 수업시수 결손등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기대심리로 인해 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묵인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문화의 변질로 인해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성적 폭력 행위가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15개 시·도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실태를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의 지도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정책입안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해결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하여 현재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의 폭력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폭력피해 실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해결방안의 구체적 사항은 초등학교 엘리트 체육 운영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하며 어린 학생운동선수들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폭력예방을 위한 1차적 노력은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결방안들은 일정부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이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어린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근절되어야 할 국민 모두의 과제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엘리트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작은 다리 역할이 되었다는 일차적인 연구의 의의를 갖으며 중·장기적인 미래 도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엘리트 스포츠 문화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더욱더 실용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욱, 신체적 학대가 운동선수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1999, 38(4), 99-112.
- 강창곤, 비우수선수의 탈사회화 과정. 한국체육학회지, 2003, 42(4), 151-161.
- 김정란, 가정폭력노출 실태분석을 통한 피해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방안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3, 8(2), 1-23.
- 김응식, 체벌에 대한 운동선수와 지도자 태도. 한국체육학회지, 2001, 40(3), 59-70.
- 김소명, 가정폭력이 집단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4, 23(1), 17-32.
- 김경숙, 김선희, 안혜임, 독일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의 협력현황 및 사례 연구, 한국 사회체육학회지, 2004, 제21호, pp. 39-57.
- 류태호, 학원 스포츠 코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Coach, 2004, 20(1), 8-11.
- 백종수,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수업 참여 실태 및 인식도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04, 8(4), 77-91.
- 박형원,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여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2004, 0(17), 101-130.
- 서영숙,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04, 11(3), 65-91.
- 김미란, 초등학교 운동부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한겨레 (2005. 7. 18).

http://www.hani.co.kr/arti/education/education_general/50926.html

<http://www.brianmac.demon.co.uk/>

<http://www.kfa.or.kr/>

http://www.childdevelopmentinfo.com/health_safety/violence_kids_sports.shtml

<http://www.peace.ca/sports.htm>

학생 운동선수들의 진로 및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조광민 교수
연구원: 정지명 박사과정
연락처: 010-7276-0676
이메일: myung811@hotmail.com

1.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2. 몇 학년 입니까?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 종목은? ()

4. 언제부터 운동부생활을 시작하였나요? ()학년

5. 본인의 장래 희망은? ()

6. 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 ① 내가 좋아서 ② 지도자(코치, 체육, 담임 선생님)들이 원해서 ③ 부모님이 원해서
④ 친구가 하라고 해서 ⑤ 다른 이유가 있다면 써주세요()

7. 중학교에 가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① 예 ② 아니요

7-1. 만약 “아니요”라면 왜죠?

- ① 운동이 힘들어서 ② 공부하고 싶어서 ③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④ 운동부 형, 언니들이 무서워서 ⑤ 코치·감독 선생님이 무서워서
⑥ 다른이유 ()

8.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면서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팀이 전국규모 대회 3위 안에 든 경험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몇 등을 몇 번 했나요?

- ① 1위()번 ② 2위()번 ③ 3위()번 ④ 입상실적 없음

9. 현재 운동부 활동을 하면서 합숙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1년에 약 며칠이나 합숙하나요?

- ① 대략()일 ② 합숙경험없음

10.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시합이 없을 때 약()시간
② 시합이 있을 때 약()시간

11. 하루 운동 연습시간이 알맞다고 생각하나요?

- ① 너무 길다 ② 길다 ③ 알맞다 ④ 짧다 ⑤ 너무 짧다

12. 하루에 몇 교시(시간) 수업에 들어가나요? ()교시(시간)

13. 만일 시험으로 인하여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보충수업을 받고 있나요?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고 있나요?

- ① 학교선생님에 의한 보충 ② 운동부 선생님에 의한 보충
- ③ 일반 학급 친구에 의한 보충
- ④ 방과후 개인적으로 부모님 혹은 과외선생님에게 보충
- ⑤ 보충수업이 없다

II. 다음은 여러분 운동부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생각하는 답을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의 운동부에서 욕을 먹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 여러분의 운동부에서 맞아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 여러분은 운동과 관련하여 주로 누구에게 욕을 먹나요?

- ① 감독선생님 ② 코치선생님 ③ 운동부 선배
- ④ 부모님 ⑤기타()

4. 여러분은 어디서 가장 욕을 많이 먹나요?

- ① 합숙소 ② 운동 연습 하는 곳(운동장 혹은 체육관) ③ 운동부실
- ④ 시합하는 경기장 ⑤ 경기장의 탈의실 ⑥ 기타()

5. 여러분은 감독, 코치선생님에게 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 ① 시합에 져서 ② 연습을 게을리 해서 ③ 규칙을 위반해서
- ④ 예절이 없어서 ⑤ 이유없이 ⑥ 기타()

6. 여러분은 운동부에서 맞아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맞았나요?

- ① 감독선생님 ② 코치선생님 ③ 운동부 선배
- ④ 기타() ⑤ 맞아 본적 없다

7. 여러분은 감독, 코치선생님에게 왜 맞는다고 생각해요?

- ① 시합에 저서 ② 연습을 게을리 해서 ③ 규칙을 위반해서
④ 예절이 없어서 ⑤ 이유 없이 ⑥ 기타()

8. 만일 여러분이 맞았다면 언제 가장 많이 맞아요?

- ① 시합 때 ② 훈련 할 때 ③ 평소 운동부 생활 중에
④ 합숙 때 ⑤ 수업 들어 갔을때 ⑥ 기타()

9. 여러분은 어디서 가장 많이 맞아요?

- ① 합숙소 ② 운동 연습하는 곳(운동장 혹은 체육관) ③ 운동부실
④ 시합하는 경기장 ⑤ 경기장의 탈의실 ⑥ 기타()

10. 여러분이 맞을 때 무엇으로 가장 많이 맞아요?

- ① 손으로 ② 몽둥이로 ③ 발로
④ 운동기구로 ⑤ 회초리로 ⑥ 기타()

11. 여러분이 맞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맞아요?

- ① 손이나 팔 ② 발이나 다리 ③ 머리 또는 얼굴
④ 가슴, 배, 등 ⑤ 엉덩이, 허벅지 ⑥ 몸전체

12.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맞아요?

() 번

13. 운동부에서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창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인가요?

- ① 감독선생님 ② 코치선생님 ③ 운동부 선배 ④ 기 타
⑤ 경험없다 (*경험이 없다면 14,15,16번은 하지 말고 **Ⅲ.운동부 생활에 관한 질문**에 답해주세요.)

Ⅲ. 다음은 여러분 운동부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생각하는 답을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운동선수는 공부보다 운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업에 꼭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선배들이 수업에 가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코차감독선생님이 수업에 가지 말고 운동만 하라고한 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 수업에 가지 말고 운동만 잘 하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담임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수업에 안 들어간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욕을 먹을 때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욕을 먹을 때 학교에 가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맞으면 시험 성적이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맞으면 시험에서 꼭 이기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운동부 후배를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맞으면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맞으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맞으면 학교에 가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코차감독선생님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운동부 생활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교생활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 여러분은 코치, 감독선생님 혹은 선배들로부터 맞은 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① 화가 났다 ② 복수심이 생겼다 ③ 운동이 싫어졌다
④ 운동이 좋아졌다 ⑤ 특별한 기분이 없었다 ⑥기타()

20. 만일 여러분이 코치, 감독선생님 혹은 선배들로부터 맞은 후에 부모님께 이야기 하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21. 부모님은 코치, 감독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면담을 하나요?

- ① 1주일에 한번정도 ② 2주일에 한번정도 ③ 한달에 한번정도
④ 6개월에 한번정도 ⑤ 하지 않는다 ⑥ 잘 모르겠다

<초등학교 체벌에 관한 법규>

제1조 (목적) 교육활동 전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감과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체벌의 개념) 체벌은 신체에 정신적,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여 학생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는 외부적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4조 교육적인 면에서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 ① 학생에게 체벌의 이유를 명백히 인지케 하여 납득이 된 후에 체벌한다.
- ② 체벌을 가하는 부위에 특히 유념하며, 체벌의 부위는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여학생은 안됨)로 한정하고 그 외의 부위는 금한다.
- ③ 체벌의(매) 수는 1회에 5대 이내로 한다.
- ④ 단체적인 체벌은 가급적 억제한다.
- ⑤ 체벌을 위한 회초리는 재질을 고려하고 일정 규격 이내로 한다.(재질=> 나무 규격 =>굵기7mm~10mm 이내, 길이 50cm 정도)
- ⑥ 체벌을 가하기 전 또는 가한 후에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체벌의 이유와 그 결과를 전화·편지 또는 직접 상담을 통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수업장의 일정 장소에 체벌도구(매)를 비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제6조 꾸중이나 질책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통해 실행하고, 큰 소리나 불량한 언어 사용으로 정신적인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종류) 체벌 종류는 훈계, 격리(10-20분 정도), 봉사활동(청소 30분 정도), 체벌 및 반성문, 학부모 면담으로 한다.

제8조 (체벌 방법)

- ① 1단계로 훈계
- ② 2단계로 격리(교실 뒤에 서 있기),
- ③ 3단계 1,2단계를 거쳐도 안 될 경우 30분 정도 봉사활동(청소, 뒷정리 등)과 반성문 작성 병행
- ④ 4단계 체벌(매)을 가하고 반성문 작성,
- ⑤ 5단계 학부모면담(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외 동반 등교하여 함께 지도 대처)

첨부 3

대법원 2006.1.13. 선고2005도679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관시사항]

-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이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 [1] 형법 제305조/[2] 형법 제305조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위대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8.30. 선고 2005노2022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이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교육방법으로서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의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간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ISBN 978-89-6114-001-0 93330